

2026년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일시 2026년 3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공동주최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일 시 2026년 3월 18일(수) 오후 2시
장 소 프레스센터(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
 (YouTube 동시 송출)
공동주최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관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PROGRAM

사회 김윤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시간	내용	
13:30-14:00	등록	
14:00-14:05	개회	
14:05-14:15	인사말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공동위원장,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15-14:45	주제발표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14:45-14:55	휴식 및 자리 준비	
14:55-16:30	종합토론	좌장 김병후 (한국청소년재단 이사장) 토론자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송종영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청소년복지학회장) 문덕주 (안산 상록경찰서 경사)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6:30	질의응답 및 폐회	



목차



주제 발표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1
김 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토론 1	촉법소년 연령 인하 쟁점에 대한 평가 29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2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토론문 39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3	중1, 보호만 할 것인가? 처벌도 가능하게 할 것인가? - 처벌하되, 책임 있는 보호주의가 우선 55 정의림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 4	토론문 63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토론 5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 일반예방과 규범효과의 관점에서 본 토론문 - 73 송종영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토론 6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에 대한 토론문 “촉법소년의 문제는 형사정책 문제인가, 복지정책 문제인가?” 79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토론 7	'면죄부'가 아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는 사법 정의의 실현 87 문덕주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사)
토론 8	소년재판실무에서 바라본 촉법소년 사건의 현황과 과제 91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주제
발표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김 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김혁(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1

목차

- I. 들어가며
- II. 소년 관련 연령의 현황과 형사책임능력
- III. 절대적 형사책임연령의 보완과 소년법의 역할
- IV. 소년 관련 연령 논의에 대한 검토
- V.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 시 효과성 검토
- VI. 나오며

2

I. 들어가며 : 소년사건과 사회적 인식

- 소년사건 사회적 이슈 부각 시 소년법 폐지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 반복
- 시민들 사이의 소년법 불신 및 촉법소년 엄벌 요구 분위기 확산
- 소년법이 관용을 베풀거나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인식 존재
- 제도의 실제 내용과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토 필요

3

II. 1. 소년 관련 연령의 현황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

제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하 생략〉

→ 형법과 소년법의 부정합?

4

II. 2.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연령

- 책임능력: 행위의 사물분별능력 및 의사결정 능력?
 - 책임능력은 존부가 아닌 강약의 문제, 형벌적응성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여지 O
- 형법 제9조: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 위해 획일적 연령 기준 설정
 - 책임능력 없음을 의제, 형벌 부과 불가능함을 소극적으로 규정함에 불과
 - 실질적 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을 전면 부정 X
 - 효과적 개입 수단 있으면 14세 이상자도 형벌 대신하는 형사제재 긍정
 - 14세 미만자에 대한 개선·교화 목적 제재까지 금지 X
- 소년법이 형법 제9조의 획일적 연령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5

III. 1. 소년법의 목적과 소년보호

- 소년법의 “건전한 성장”이나 “보호” 단순 복지 개념 X
 - 보호처분은 강제조치 수반, 신체 자유 제한 등 형사제재의 일종
- 소년보호: 형벌적응성 등 개별적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우선 투입하도록 한 정책적 이념
 - 적극적 보호나 처벌 면제가 아닌, 잘못에 대한 형사제재를 통해 반성과 정상적 성장 유도

6

III. 2. 소년연령을 통한 형사책임연령보완

- 소년연령 상한(19세 미만)
 - 14세 이상자도 성인과 완전 동일한 책임능력X
 - 불완전한 책임능력 고려, 사형/무기형 완화, 부정기형 등 특례 조치
- 소년연령 하한(10세): 형사책임능력 유무 개별 판단
 -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제재의 범위 확장 기능
 - 소년법은 단순 시혜적 법률이 아님

7

IV. 1. 소년 관련 연령 논의 검토 기준

- 연령 기준 설정은 형사제재 범위와 직결되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
 - 소년 관련 연령 기준, 형법의 과제(사회보호)와도 연관
- 검토 기준
 - 현행 기준이 책임능력 제대로 미반영, 저연령자 교화에 장애?
현행 기준이 규범 안정화나 사회방위에 악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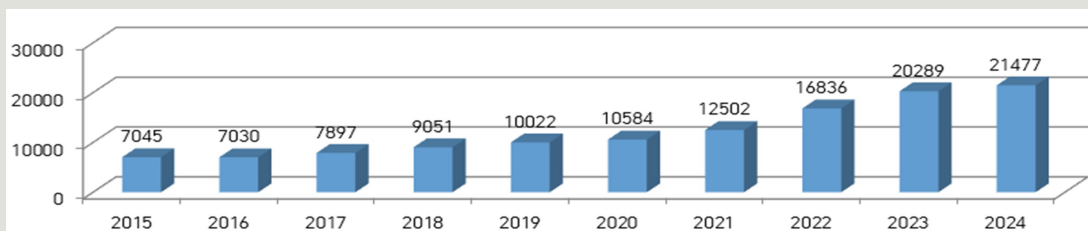
8

IV. 2.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 검토 (1) : 연소자의 성숙도와 형사미성년자

-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의 논거
 - 과거 대비 아이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 및 정보 습득량 증가
성범죄의 경우 신체적 발육 상태 고려 필요
-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의 반대 논거
 - 단순 지식 절대량 증가와 책임능력(의지적 요소 포함)은 직결 X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파악 필요
신체적 발육 상태는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과 무관
형벌을 통한 재사회화 기대 난망 형벌적응성 측면에서도 연령 하향 부적절

IV. 2.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 검토 (2) : 사회보호기능 저하 여부

- <최근 10년간 촉법소년사건의 법원 접수 추이>



-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통계월보(이승현, “촉법 소년 선별 송치 및 경찰 선도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찰청 사회적약자추진위원회 발표자료, 2025.11.27.에서 재인용)

IV. 2.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 검토 (2) : 사회보호기능 저하 여부

▪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살인	강도	강간·주행	방화	절도	폭력	기타	
2022년	총계	16,435	1	15	557	58	7,874	4,075	3,855
	남	12,900	1	9	533	53	6,030	3,341	2,933
	여	3,535	0	6	24	5	1,844	734	922
2023년	총계	19,653	3	7	760	56	9,406	4,863	4,558
	남	14,922	3	4	701	48	6,978	3,856	3,332
	여	4,731	0	3	59	8	2,428	1,007	1,226
2024년	총계	20,814	0	11	883	48	10,418	4,873	1,500
	남	16,309	0	2	838	37	7,947	3,923	1,069
	여	4,505	0	9	45	11	2,471	950	431
계	총계	56,902	4	33	2,200	162	27,698	13,811	9,913
	남	44,131	4	15	2,072	138	20,955	11,120	7,334
	여	12,771	0	18	128	24	6,743	2,691	2,579

- 출처: 경찰청 제공 최수진 의원 국회 요구자료(<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1&utm,> 2026년 3월 7일 최종 검색)

IV. 2.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 검토 (2) : 사회보호기능 저하 여부

-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의 논거
 - 최근 저연령 소년의 범죄 급증, 질적으로도 악화
- 연령 인하 반대 논거
 -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강제성과 제재성을 지닌 다양한 보호처분 가능
구금 처우(소년원 송치) 가능성 고려 시 실질적 책임연령 10세로 평가 가능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형사책임연령 하한(14세 미만) 하향 명확히 반대
현행 기준이 사회보호 기능에 직접적 지장을 초래했다 단언 어려움

V. 1. 연령 인하 효과성 검토 - 실체법적 측면 (1): 실형 선고 가능성의 한계

- 13세 하향 주장은 13세 소년에게 징역/금고 실형 선고 가능성을 전제함
- 현실적 실형 선고 가능성 극히 낮음 (2023년 범죄소년 구공판 비율 8.8% 불과)
- 구공판 인원 중에서도 실형 선고 극소수 (대부분 소년부 송치 또는 선도조건부 종결)
- 실제 실형 선고 비율 1% 미만 예상: 연령 하향 시 상징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 농후

13

V. 1. 연령 인하 효과성 검토 - 실체법적 측면 (2): 보호처분의 위하력

- 현행 소년법으로도 13세 소년 최장 2년 소년원 송치(구금 처우) 가능
-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부과 및 위반 시 처분변경(소년원 재수용) 제도 활발히 활용
(2023년 소년원 수용 인원 중 약 37.5%가 보호관찰 위반 재수용자)
- 보호처분 역시 행동 통제 강력 수단: 현행 제도로도 상당 수준 사회방위 가능

14

V. 2. 연령 인하 효과성 검토 - 절차법적 측면 (1): 현행 촉법소년 대응 문제 해결?

- 형사소송법 대비 소년법 절차 간략, '수사' 해당 규정 사실상 부재
 - 경찰의 촉법소년 조사 법적 근거 불명확, 방어권 보장 장치 미비
 - 임의 수사 한정: 증거인멸 우려 있어도 체포, 구속, 압수 등 강제수사 불가
-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시 13세 소년 형사소송법 적용 가능 단, 연령 인하해도 10-12세 촉법소년 사건 동일 문제 잔존 소년법 정비/형사미성년자 연령조정 중 효과적 수단 고민요

15

VI. 나오며 (종합 결론)

- 소년법: 획일적 책임연령 기준 보완, 법익침해 저연령자 국가 개입 조정 장치
- 단순한 은전이나 형사책임 일률적 면제 제도가 아님
- 연소자의 통찰/조종능력 및 형벌 적응성 향상 경험적 근거 부족 (인하 정당성 획득 어려움)
- 연령 하향의 실체적·절차적 사회보호 기여 제한적
- 피상적·감정적 주장 지양, 실효성 있는 대응 모색 위한 신중·체계적 검토 요구

16

I. 들어가며

소년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것이 소년법의 폐지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에 관한 논의이다. 이미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소년법에 대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며, 촉법소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분위기도 상당히 확산된 듯하다. 이러한 인식의 근저에는 소년법이 소년의 범죄 또는 촉법행위에 관용을 베풀거나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법이라는 인식이 상당 부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년의 건전한 성장만을 강조하는 소년법의 목적 속에서 피해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배제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러한 부정적 시각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형사미성년자 제도와 소년법이 단순히 소년을 형사제재로부터 면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며, 소년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오해가 형사미성년자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오로지 일반 시민들의 책임으로만 돌린 채, 소년법의 이념인 건전한 성장의 도모나 소년 보호의 필요성만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본래 이념이나 법률, 제도는 사회와의 소통을 벗어나서는 그 존재 의의를 지니기 어렵다. 따라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귀 기울이며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특히 소년사범을 포함한 형사사범 체계 전반에서 피해자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거나 피해 회복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¹⁾ 다만, 해당 논점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므로, 촉법소년과 형사책임연령 문제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범죄 또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적 개입이 상정되는 이상, 특정 연령층에 속한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이 연령상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의 법익침해 또는 위험행위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규율하고 있음에도,²⁾ 그동안 이러한 연령층의 형사책임능력, 나아가 형법과 소년법의 관계를 정립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범죄나 촉법행위를 저지른 소년을 특별히 취급하는 이유가 이론적으로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다면, 자극적인 보도나 사회적 분노에 편승한 극단적인 주장이나 도전에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본 발표문은 김혁,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9, 257-286면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가필한 것이다.

1) 관련 논의로는, 김혁, “형사제재 내에서의 피해회복제도 도입에 관한 시론”, 비교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25, 319-354면; 김혁, “호주 퀸즐랜드 소년사범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2024, 1-31면; 김혁,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2호, 2023, 127-159면; 김혁, “일본에서의 교정처우·교정교육과 피해자 관여에 관한 최근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3, 37-58면; 김혁,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형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2022, 87-126면; 김혁,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3호, 2021, 1-46면; 김혁, “캐나다 소년형사사범에서의 피해자의 법적 지위”, 동아법학 제93호, 2021, 165-194면; 김혁,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범·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3호, 2020, 117-134면; 김혁, “뉴질랜드에서의 회복적 사범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2020, 75-102면; 김혁, “영국에서의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범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경찰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7, 9-34면.

2) 소년법은 범죄나 촉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우범소년도 보호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우범소년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하에서는 먼저 소년 관련 연령 규정의 현황과 책임능력의 본질 및 연령 문제를 검토한다. 이어서 소년법이 절대적 형사책임연령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형사책임 연령기준을 낮출 경우 실제적·절차적 측면에서 어떠한 실효성이 있을지를 가능한 한 중립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II. 소년 관련 연령의 현황과 형사책임능력

1. 소년 관련 연령의 현황

형법은 제9조에서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미성년자 외에 별도의 연령 기준을 따로 언급하고 있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³⁾ 반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율하고 있는 소년법 등은 다양한 연령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소년법은 19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제2조), 이들이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4세 이상인 자는 물론, 10세 이상인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다만, 보호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제32조 제3항), 수강명령 및 장기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그 대상으로 한다(동조 제4항). 또한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하며(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소년일 당시 4호 또는 5호 보호처분을 받아 19세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처분 변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49조 제2항).

한편, 소년법은 형벌을 부과할 때에도 연령에 따른 특칙을 두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제59조),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과 형의 감경(제60조), 18세 미만자의 환형처분 금지(제62조), 소년에 대한 가석방의 특례(제65조, 제66조) 및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제6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정기형의 종료 등에 대한 특례(보호관찰법 제50조), 19세 미만 수형자의 소년교도소 구분수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23세 되기 전까지의 계속수용(동법 제12조 제3항), 성인과의 분리수용(동법 제13조 제2항)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에 있어서도 특례가 적용된다.

이렇듯 소년 연령층을 별도로 규정하고 연령에 따라 상이한 처분 및 특칙을 마련하고 있는 여러 규율 내용은 언뜻 형법 제9조와 정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특히 형법 제9조를 14세 이상자의 형사책임능력을 성인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소년연령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동일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이상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있어서도 차별 없는 취급을 받아야 할 지위 내지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법과 소년법 간의 표면상의 부정합은 소년법의 정체성 및 존재 의의 자체에 대한 의문을 촉발시켜, 소년에게 시혜를 베푸는 소년법의 폐지 내지 소년법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자는

3) 다만, 형법 제51조 제1호는 범인의 연령이 양형의 참작사유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14세 이상자의 행위를 모두 동일하게 평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담론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이러한 담론은 형법 제9조 자체에 대한 의문, 즉 형벌부과가 가능한 연령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고 있다는 주장과 맞물려 자연스럽게 형벌 부과 가능 연령층의 확대 논의를 이끌어 낸다. 즉 소년연령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논의가 형사책임연령의 인하 논의를 이끌어내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렇듯 소년 관련 연령 설정은 소년법만의 독자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형법과 소년법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2.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연령

(1) 형사책임능력의 본질

책임능력의 존재는 책임비난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고,⁴⁾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은 행위의 시비·선악을 분별하고 이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경우 책임능력은 형벌능력이 아닌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을 전제로 하는 범죄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⁵⁾ 그러나 비난의 핵심을 이루는 행위자의 타행위 가능성에 관한 판단 자체가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면,⁶⁾ 규범적 책임론에 따르더라도 예방목적이 책임의 내용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⁷⁾ 형법상 비난이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점을 생각할 때 형벌적응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책임능력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또한 범죄능력이 형벌 부과와 정당화 근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유책행위능력은 형벌능력보다 내적 관련성을 가진다.⁸⁾ 그렇다면 책임능력 역시 행위에 대한 비난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의 내용뿐 아니라, 예방을 염두에 둔 전망적인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은 책임능력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와 제10조의 구조를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형법은 일단 책임의 존재를 추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만약 책임능력이 행위 당시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책임능력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행위 당시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형법 제10조의 경우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가 존재하는 때에 비로소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존재라는 추정이 깨어지고 개별적인 검토를 통하여 그러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존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⁹⁾ 제9조의 경우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요소의 존재만을 이유로 적법행위능력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곧바로 책임이 조각됨을 의제하고 있다. 게다가 이때에는 어떠한 반증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난가능성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행위 당시의 적법행위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생물학적 요소의 존재만을 이유로 책임을 조각시킨다면, 비난가능성의 존재가 의심스러운 경우에조차 비난가

4)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마553 결정.

5) 박상기·전지연,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제4판, 집현재, 2018, 155면.

6) 배종대, 형법총론 제11판, 홍문사, 2013, 429-432면.

7) 堀内捷三, “責任の概念”, 西田典之·山口厚, 刑法の争点第3版, 有斐閣, 2000, 57면.

8) 山中敬一, 刑法總論II, 成文堂, 1999, 561면.

9) 형법 제10조에 관한 판례 및 통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는, 김혁,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2017, 9-15면.

능성에 대한 논증을 회피하는 꼴이 되어 결국 책임 개념을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으로 이해하는 전제 자체가 무너짐을 의미한다.

이렇듯 책임능력을 반드시 행위 당시만을 기준으로 비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적법행위능력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책임능력의 내용을 범죄능력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 목적 내지 예방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할 때에서야 비로소 제9조 및 제10조를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¹⁰⁾ 즉 제9조의 의미를 유책행위능력이 없거나 연령적 특성으로 인하여 형벌이 형사정책적 목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제10조의 의미를 유책행위능력 자체에 의심이 있고 형벌적응성의 측면에서 치료감호, 치료명령 등의 수단을 통한 개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양 조문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2) 형사책임연령의 설정과 형법 제9조의 취지

연소자는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하여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들의 법의침해 또는 위험행위를 성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특성상 연소자에 대한 형벌은 오히려 의무교육 등 사회화의 기회를 박탈하여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범죄능력과 예방적 효과를 내포한 책임능력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연령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요소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형법 제9조는 연령을 기준으로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9조가 연령 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한 것은 명확성과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함인데,¹¹⁾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책임능력의 유무를 정하게 되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소년의 연령을 몇 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너무 낮게 규정하거나 연령 한계를 없앤다면 책임의 개념은 무의미하게 되고, 14세 미만이라는 연령기준은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형법 제9조의 연령기준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다.¹²⁾ 하지만 연령 기준을 몇 세로 할 것인지 그 자체가 입법정책의 문제인 이상 연령기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의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다.

특히 형법 제9조를 특정 연령에 도달한 자에 대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구비되었음을 선언하는 실질적인 형사책임연령에 관한 조문으로 해석한다면, 이러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실질적인 책임능력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음을 물론이거니와 개선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체

10) 다만, 책임능력에 관한 추정을 깨는 사유로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형법 제11조)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1)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40면;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12, 17면.

12) 헌법재판소 2003. 9. 25. 2002헌마533 결정.

의 형사제재 역시 무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14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들을 단순히 훈계방면하거나, 책임연령 자체를 하향 조정하여 이들에게 오로지 응보 또는 사회 격리만을 염두에 둔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형법 제9조는 형사책임연령을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성격을 가지는 조문이 아니다. 사실 14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고, 아무리 성장발달과정에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없던 책임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긴다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다. 이렇듯 형법 제9조는 단지 형사정책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의 책임능력이 없음을 의제함으로써 그들에게 형벌 부과가 불가능함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즉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자의 실질적인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을 부정하거나, 14세 이상자에게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한다고 하여 완전한 책임능력을 갖춘 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성격을 가지는 조문이 아니다. 그 결과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벌의 부과만이 허용되지 않을 뿐이고, 개선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제재의 부과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¹³⁾

한편, 형법은 형사미성년자 외에는 별도의 연령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아서, 일단 14세 이상이라면 차별 없는 동등한 취급을 상정하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14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10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적어도 연령을 이유로 형벌 이외의 형사제재를 따로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형법 제51조에서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형법은 14세 이상자를 항상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¹⁴⁾ 또한 형법 제10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책임능력은 단순히 존부의 문제가 아니라 강약의 문제로도 이해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형사책임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¹⁵⁾ 즉 우리 형법은 행위자의 연령적 특성에 따라 형벌적응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양형의 문제로서 개별적인 책임능력의 정도에 관한 판단을 법원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때 형벌의 보충성이라는 관점에서 형벌 외에 별도의 효과적인 개입수단이 있다면, 14세 이상인 자들에 대해서도 형벌을 대신하는 형사제재가 긍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13) 형법 제9조를 두고 14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법적 비난이나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 내지 보호의 대상으로 하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마찬가지로 취지라고 할 수 있다(오영근, 형법총론 제4판, 박영사, 2018, 260면). 다만, 이때 교육 내지 보호는 형사제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의 목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순수한 복지 내지 교육적 성격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14) 물론 이때의 연령은 저연령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고령자 역시 양형의 참작사유가 된다.

15) 최병각,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 473면.

16)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2016, 57면.

III. 절대적 형사책임연령의 보완과 소년법의 역할

1. 소년법의 목적과 소년보호

법익침해행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소년은 반사회성이 있는 자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들에 대한 개입에 있어 형사제재를 상정하는 이상 소년법의 목적 내지 이념 역시 형사책임과의 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형벌과 보호처분의 본질이 다름을 이유로 보호처분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만이 문제될 뿐, 형사책임이나 책임능력의 문제는 별도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년법은 형사책임연령층에 해당하는 자(14세 이상)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방 목적 역시 책임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형벌과 보호처분의 부과원리를 상호 무관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그런데 소년법은 “건전한 성장”이나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형법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건전한 성장”이나 “보호”라는 용어는 통상 복지 또는 교육 영역에서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강조하면, 소년법 상의 소년보호는 형사책임과 무관한 것이 되고 만다. 실제로 소년보호사건에 있어 제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은 피고인이 아닌 피보호자이며, 원 결정에 따라 소년원 송치처분을 집행하는 것은 비행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즉시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지,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년의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처분을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며, 일반 형사사건에 비하여 소년을 차별 취급하더라도 이는 “반사회성 있는 소년을 교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어서 그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동 조항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¹⁷⁾ 이러한 태도는 보호처분과 형벌의 차별성, 나아가서는 소년법과 형법 간의 목적상의 구별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결정에 대해서는, “소년보호는 ……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한 강제조치를 수반하므로 사법적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고, “특히 소년원 수용처분의 경우 일정기간 시설에 감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형사처벌과 같은 효과가 있음”으며, “소년보호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의 일종인 치료감호에 있어서는 형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있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항고심 결정시 보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따라 일부라도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유독 소년보호사건에서만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에 전혀 산입할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¹⁸⁾ 실제로 반대의견이 지적한 문제인식에 기인하여 항고가 이유 있

17)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마768 결정.

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 기간에 산입(8·9·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하는 조문이 신설되었다(제45조 제3항, 법률 13524호, 2015. 12. 1.). 헌법재판소의 반대의견의 논거 외에도 소년법상 진술거부권의 규정(제10조), 국선보조인제도의 존재(제17조의2) 등은 바로 보호처분의 형사제재적 성격 내지 소년법의 형사법적 성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¹⁹⁾ 소년법이 진정한 의미의 보호 내지 복지적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소년에 대한 급부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이익을 수반하는 조치 내지 처분을 예정하고 있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소년법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듯 복지적·교육적 의미의 소년 보호를 위해 소년의 실질적 자유를 제약, 박탈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소년법이 형사법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은 일본 소년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일본 소년법의 경우 우리법과 달리 촉법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아동복지선의주의를 채택하고 있고(소년법 제3조 제2항, 제6조의6, 아동복지법 제25조),²⁰⁾ 보호처분 외에도 가정재판소가 아동복지기관송치결정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소년법 제18조 제1항)²¹⁾ 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아동복지법적 조치와 사법적 조치가 상호 중첩, 교차할 수 있는 완충영역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물론, 우리 소년법의 경우에도 보호처분 중 1호 처분²²⁾이나 6호 처분²³⁾에 있어서는 언뜻 형사제재적 성격이 상당부분 희석되어 있는 듯 보이기도 하고(소년법 제32조 제1항), 소년연령의 상한(19세 미만)은 형법상 성인에 대하여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형벌의 범위 및 정도, 형의 집행 등에 있어서도 특별한 효과를 발생시키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유제한의 정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보호처분 역시 자유제한 또는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제재임은 분명하고,²⁴⁾ 당해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 변경을 통하여 시설 내 처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제37조),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향후 형사재판에서 상습성 인정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²⁵⁾ 이들 처분을 도저히 복지적인 성격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실을 도외시한 채 소년법에 따른 개입을 소년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기로 파악한다거나 복지적 입장에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은 논리 정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18)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4헌마768 결정(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19) 관련 논의로는, 김혁, “소년의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와 보조인 제도의 재조명”,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2020, 139-165면.

20) 다만, 고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를 사망시킨 죄, 사형 또는 무기 혹은 단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와 관련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사건 등 중대사건으로 아동상담소장에게 송치된 사건의 경우 이를 가정재판소에 송치하여야 하므로(일본 소년법 제6조의7), 중대사건의 경우 아동복지기관선의의 원칙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21) 보호처분 중 하나(일본 소년법 제24조 제1항 제2호)로 아동자립지원시설 또는 아동양호시설에 송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제18조 제1항에 따른 조치와 보호처분으로서 아동복지시설에 송치하는 것 사이에는 처우상의 차이는 없으며(카와이데 토시히로, 소년법, 박영사, 2016, 248면),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의 처우는 개방처우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6호 처분과는 구별된다(일본 법제에 대해서는, 김혁, “일본의 소년법제와 소년범죄 대응에 관한 분석적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37권 제1호, 2024, 99-131면).

22)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24) 강지명,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체계 정비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2018, 53면;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51면.

25) 대법원 1990. 6. 26. 90도887; 대법원 1989. 12. 12. 89도2097 결정.

또한 형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형벌과 소년법이 마련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목적이 완전히 이질적인 것도 아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책임은 단순히 과거 행위에 대한 비난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지는 개념이 아니며, 형벌 역시 법익침해행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예방이라는 목적을 염두에 둔 전망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년법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선언하면서,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 즉 형벌 역시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자의 관련성 내지 유사성을 소년법 스스로 시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호처분이 자유제한적 처분이라는 측면에서 형벌과 기능적 동일성을 가짐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²⁶⁾ 형법과 소년법의 목적이나 성격을 엄격히 구별 내지 분리하여 바라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오히려 양자의 통합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가의 지나친 간섭이나 개입으로부터 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결국 형사법의 원리나 형사제재의 틀을 벗어난 소년의 건전한 성장 내지 소년보호이념이란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소년법상 소년보호는 형사제재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년의 형벌적응성 등 책임능력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선택에 있어서 보호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정책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소년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형사제재를 수단으로 반성과 반응을 요구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정상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적극적인 보호를 예정하고 있다거나 애초에 소년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²⁷⁾

2. 소년연령을 통한 형사책임연령의 보완

소년법의 취지 내지 존재 이유는 소년의 형벌적응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형벌보다는 보호처분을 우선 투입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개입 과정에서 소년에게 답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²⁸⁾ 특히 소년법은 연령 범위를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예방의 관점에서 형법 제9조의 획일적 연령기준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소년법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연령의 하한(10세)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호). 전술한 바와 같이 형법 제9조는 14세 미만자를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 의제하고 있을 뿐, 14세 미만자의 실질적인 조종능력 또는 통찰능력까지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은 형법 제9조에 따른 획일적 연령기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촉법소년 연령층을 추가로 설정하고, 저연령자가 실질적인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범죄소년과 마찬가지로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소년법에 따른 소년연령의 하한은 형사책임연령을 사실상 재설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즉 소년연령의 하한은 촉법행위자에 대한 형사제재의 범위를 확장하는

26) 佐伯仁志, “少年法の理念—保護処分と責任—”, 猪瀬横一郎 외(편),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2001, 41-43면.

27) 소년법은 예방의 측면에서 형사제재의 필요성이 없는 때에는 심리불개시, 불처분결정, 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경우에만 자유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소극적 보호를 표방하고 있다. 형사제재의 자유제한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형사제재의 최후수단성 및 비례성의 관점에서 소년법의 이러한 태도는 당연한 것이며, 이는 형사법 전체의 원리(보충성원칙)와도 조화된다.

28) 김혁,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54-55면.

기능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소년법이 단순히 소년에 대한 시혜적 법률이 아님은 명확해진다.

또한 소년연령의 상한(19세 미만)은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책임능력의 유무를 일차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형법 제9조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하는 기능을 가진다. 소년법은 연령 규정을 통하여 14세 이상자라고 할 지라도 이들이 성인과 완전히 동일한 정도의 책임능력을 갖춘 것이 아님을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에 대해서는 획일적 형사책임연령 기준에 따른 흠결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비·선악변별능력, 형벌적 응성 등에 대한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형벌과 보호처분 중 어느 것이 소년의 개선 껀생에 도움이 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보호 필요성 판단과도 일치한다.²⁹⁾

마지막으로 형벌을 선택할 때에도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이었던 자의 사형 및 무기형을 완화하고(소년법 제59조), 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며(제60조 제1항), 형을 감경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형법 제9조의 취지와 소년의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고려할 때 소년법 상의 이러한 특례 조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나 형벌 상 특례 조치의 존재 자체만을 두고 소년법이 형법의 태도와 모순된다거나 형사법의 원리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별도의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³⁰⁾

IV. 소년 관련 연령 논의에 대한 검토

1. 검토의 기준

형사제재와 관련된 연령의 기준을 몇 세로 설정할 것인지는 형사제재의 가부 및 범위와 직결되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다. 만약 이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형법 본연의 목적이나 기능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해당 연령 기준은 그 정당성을 잃게 되고 연령 기준의 재설정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물론 소년법에 따라 설정된 각종 연령 기준 역시 형법의 과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소년법은 기본적으로 형사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소년법의 목적 역시 형사법의 기본 원리 내에서 인정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형법은 기본적으로 제재수단을 동원하여 법익을 보호하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법익의 가치를 이해하고 범죄억지의 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규범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법익을 침해 또는 위협을 야기한 자에 대한 제재가 그의 개선 및 교화에 도움이 될 때 그러한 형법의 법익보호 내지 사회보호적 기능이 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이때 예방목적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형벌의 과잉이나 무분별한 형사제재는 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비롯한 소년 관련 현행 연령의 기준이 저연령자의 범죄 내지 촉법행위를 방지하

29) 渡邊一弘, “少年の刑事責任能力”, 刑法雜誌51卷2号, 2012, 217-218면.

30) 한편, 판례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지, 형법 제9조, 소년법 제59조와 같이 형사책임의 문제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형사책임의 본질을 비난가능성으로만 파악한다면 판례의 결론이 타당할 것이나, 예방이라는 목적 역시 책임의 내용으로 파악하는 한, 소년법 제60조 제2항 역시 형사책임과 무관한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다.

거나 이들을 교화시키는 데에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규범의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절한 형사제재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관련 문제를 검토하여야 한다. 만약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그러한 문제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현행 연령기준의 부당성 내지 연령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들은 그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2.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에 대한 검토

(1) 연소자의 성숙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일치 여부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론의 논거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명제 중 하나는 지금의 아이들이 과거에 비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해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지적 요소와 의지적 요소로 구성된 책임능력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신체적 성숙이 곧바로 연소자의 책임능력의 존재를 의제한다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과거에 비해 지금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된다. 특히 연령 인하론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연소자의 정보 또는 지식의 습득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14세를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으로 설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령 인하론은 정보 또는 지식의 양적 증가가 곧바로 정신적 성숙, 즉 책임능력의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전제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연령을 염두에 둔 정신적 성숙 여부의 판단 문제는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연령 설정은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소자의 지식 획득의 양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최초로 설정한 당시에 비하여 증가한 것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 점은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단순한 지식의 절대량의 증가가 책임연령을 인하하여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령 설정에 관한 정책 판단에 있어서는 당시 사회가 연소자에게 어느 정도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정도의 성숙도를 기대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형법 제정 당시의 연소자는 지금보다 현저히 어린 나이에 경제 활동을 시작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리 입법자는 그러한 사회 상황을 고려하여 14세를 형사미성년자의 하한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현재의 12세 또는 13세의 자가 과거의 그들에 비하여 사회에서 기대하는 수준에 이를 만큼 정신적으로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형법 제정 당시에 비해 의무교육기간이 늘어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복잡 다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 즉 사회가 요구하는 정신적 성장 기간이 훨씬 길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있다. 또한 설사 연소자의 지적능력이 동시대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더라도 그것이 곧 의지적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졌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적 능력은 다양한 사회활동과 그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하여 길러질 수 있는데, 의무교육의 대상으로서 여러 사회활동에 제약이 있는 연소자들에게 과거 이상으로 의지적 능력의 성장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의 연소자의 통찰능력 및 조종능력의 성숙도가 과거에 비하여 향상되었다는 명제는 반드시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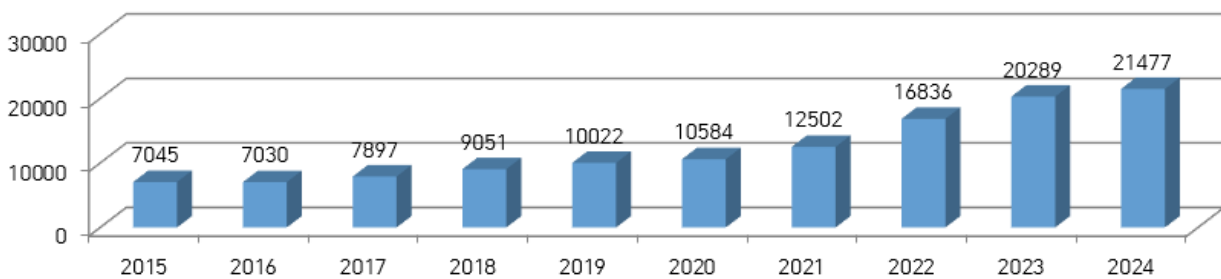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형사책임능력의 내용을 행위 당시의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은 물론 형벌을 통한 예방의 효과성까지를 고려한 개념으로 파악할 경우,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소자에 대한 형벌이 그들의 교화 및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만 형사책임연령 인하론의 정당성이 긍정될 수 있다. 연령 인하론이 형벌 중에서도 특히 자유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소자에 대한 형집행은 과거에 비하여 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연소자에게 자유형을 집행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의무교육의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사회화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자에게 형벌을 통한 재사회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유형보다는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소년원에서의 처우가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보아 타당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벌적응성의 측면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한을 하향 조정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분명하지 않다.

(2) 사회보호기능의 저하 여부

현행 형사책임연령 기준이 형벌의 사회보호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형벌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야 할 만큼 연소자의 촉법행위가 빈번하고 심각하며, 보호처분만으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의 관련 통계에는 일정 부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관련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이나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수는 지난 10년간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에는 10년 전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경찰청 자료에서도 최근 3년간 촉법소년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촉법행위의 유형별로 보면 절도와 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최근 3년 사이 상당한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10년간 촉법소년사건의 법원 접수 추이〉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통계월보(이승현, “촉법 소년 선별 송치 및 경찰 선도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찰청 사회적약자추진위원회 발표자료, 2025.11.27.에서 재인용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폭력	기타	
2022년	총계	16,435	1	15	557	58	7,874	4,075	3,855
	남	12,900	1	9	533	53	6,030	3,341	2,933
	여	3,535	0	6	24	5	1,844	734	922
2023년	총계	19,653	3	7	760	56	9,406	4,863	4,558
	남	14,922	3	4	701	48	6,978	3,856	3,332
	여	4,731	0	3	59	8	2,428	1,007	1,226
2024년	총계	20,814	0	11	883	48	10,418	4,873	1,500
	남	16,309	0	2	838	37	7,947	3,923	1,069
	여	4,505	0	9	45	11	2,471	950	431
계	총계	56,902	4	33	2,200	162	27,698	13,811	9,913
	남	44,131	4	15	2,072	138	20,955	11,120	7,334
	여	12,771	0	18	128	24	6,743	2,691	2,579

출처: 경찰청 제공 최수진 의원 국회 요구자료(<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41&utm>, 2026년 3월 7일 최종 검색)

앞서 본 통계에 따르면 언뜻 14세 미만자의 촉법행위가 최근 양적으로 증가하고 일부 범죄 유형에서는 질적으로도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현행 형사미성년자 규정이 연소자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형사미성년자의 촉법행위가 증가 경향에 있는 이상 형사책임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저연령 소년들에 대한 위하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증가, 재범방지의 필요성, 13세와 14세 이상 소년 사이의 보호처분 비율 유사성, 중학교 진학 연령 등을 근거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논의되어 공론화 과정 중에 있다.

물론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소년법에 따라 다양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보호처분은 일정한 강제성과 제재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법 제9조의 규정만을 기준으로 형법의 사회보호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구금 처우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역시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³¹⁾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형사책임연령을 10세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 사실 구금 처우가 가능한 연령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책임연령 기준은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높다고 볼 수 없으며,³²⁾ 유엔 아동

31) 다만, 10호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소년법 제32조 제4항).

32) 우리와 같이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을 14세로 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한 연령의 하한은 대략 12세 이상이며, 14세 미만 소년의 시설내 처우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시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년원 송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년법 제24조 제1항).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久木元伸 외, 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及び少年審判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の解説, 法曹会, 2011, 143면. 캐나다의 경우에도 행위시 12세 미만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형사법[Criminal Code] 제13조). 한편,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경우 과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책임무능력(doli incapax)이 추정되어 검사가 책임능력의 존재를 입증할 때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으나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the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제34조에 따라 책임무능력의 추정이 폐지되어 현재 형사책임의 연령기준은 10세인데 반해, 호주 퀸즐랜드주의 경우 여전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무능력이 추정된다(형법[Criminal Code] 제29조).

권리위원회도 형사책임연령의 하한을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대해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³³⁾ 그렇다면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형법의 사회보호 기능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거나, 그것이 촉법행위 증가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최근 촉법소년의 실태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다. 형사책임연령의 조정은 본질적으로 입법정책에 관한 문제이므로, 그 결론에 앞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할 경우 사회보호의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령 현행 법체계의 사회보호 기능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더라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 실제로 사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연령 하향에 따른 실체법적·절차법적 장단점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V. 형사책임연령 하향 조정시의 효과성 검토

1. 실체법적 측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견해는 결국 13세 소년에게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저연령 소년에 대해 벌금형을 상정하기는 어렵고,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등 역시 기존의 보호처분(2·3·4·5호 처분)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타당성 여부와 별개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이 사회방위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실제로 13세 소년에 대해 징역·금고형의 집행이 일정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13세 소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검찰의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범죄소년 55,009명 중 구공판 인원은 4,863명으로 전체의 8.8%에 불과하다.³⁴⁾ 또한 같은 해 제1심 소년형사공판사건의 재판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3,023명 중 정기형은 15명(0.5%), 부정기형은 1,045명(34.6%)이었고, 1,042명(34.5%)은 소년부송치 결정을 통해 다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다.³⁵⁾ 이는 전체 범죄소년 가운데 약 10% 미만만이 구공판의 대상이 되고, 그중 일부만이 실형 선고에 이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범죄소년의 상당수가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선도조건부 훈방이나 기소유예(조건부 기소유예 포함)로 종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전체 범죄소년의 1%에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수치에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모든 연령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보다 연령이 낮은 13세 소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더욱 제한적일 것이다. 더욱이 2023년 14세 미만이 9·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신규 수용된 인원이 64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³⁶⁾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더라도 13세 소년의 실

33)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위원회가 작성한 일반논평 제24호는 아동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General comment No. 24 (2019)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para.22.).

34)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5, 578면.

35)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952면.

36)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2024, 241면.

형 선고인원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책임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행 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개정이 상징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 물론 실행 가능성을 근거로 일반 시민들에게 규범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일반예방에 기여할 수 있거나 촉법소년에게 위하효과를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정확한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한편, 현행 소년법에 따르더라도 13세 소년에 대해서는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므로 구금 처우를 통한 사회방위의 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년원 수용자에게는 임시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고(보호관찰법 제30조 제4호), 보호관찰 위반 시에는 처분을 변경하여 다시 소년원에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처분변경제도는 실무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따라 준수사항이나 부가처분 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변경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³⁷⁾ 실제로 2023년 한 해 보호관찰 대상소년 중 보호처분이 변경된 인원은 5,334명에 이르며, 소년원 전체 수용인원 2,092명 중 약 37.5%에 해당하는 785명이 보호관찰 위반을 원인으로 다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난다.³⁸⁾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보호처분 역시 형벌 못지않게 소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제도 아래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사회방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할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절차법적 측면

형사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촉법사건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그러나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에 비해 절차 규정이 매우 간략하며, 특히 형사소송법의 ‘수사’에 해당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³⁹⁾ 이러한 입법 태도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고려하여 절차의 형식성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되지만,⁴⁰⁾ 그 결과 촉법사실의 규명이나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⁴¹⁾

실무에서는 경찰이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뒤 사건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촉법소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역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찰 단계에서의 촉법사건 조사는 기능적으로는 수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수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범위는 임의적 수단에 한정된다.⁴²⁾ 따라서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신병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⁴³⁾ 현

37) 김혁,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2020, 259-284면.

38)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105면 및 242면. 다만, 처분변경 중 재범으로 최초 보호처분이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되어 원처분이 종료된 것도 포함된다.

39) 소년법에서 형사소송법의 수사에 대응하는 조문은 제48조의 준용규정과 제55조의 ‘구속영장의 제한’ 정도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촉법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규정이다.

40)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보급판), 2014, 4면.

41) 김혁, “경찰단계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4권 제2호, 2016, 295-324면.

42) 한편, 경찰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한 이후에 소년부 판사는 동행영장(소년법 제13조 제2항), 긴급동행영장(제14조), 임시조치(제18조)에 의한 신병확보를 할 수 있고, 감정(제26조)을 명하거나 검증·압수·수색(제27조)을 실시할 수 있다.

행 법체계 아래에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체포나 구속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실무에서는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사건이 소년부에 송치된 이후에 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소년법 제13조 제2항). 또한 장물 확보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행위자가 촉법소년임이 명백하다면 임의제출 외에는 압수 등 강제수사를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할 경우 13세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수사가 가능해져 일정 부분 사회방위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촉법소년이라 경찰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인터넷 상에서의 일부 발언 내지 주장은 체포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한계를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10세에서 12세 사이의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동일한 문제점이 여전히 남게 된다. 결국 촉법소년 사건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증거 확보를 도모하고, 동시에 경찰 조사 과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촉법소년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형사책임연령 인하보다 촉법소년 조사 절차를 명확히 규율하는 방향으로 소년법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VI. 나오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법은 별도의 연령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입법기술상 일률적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형법 제9조의 책임연령 기준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이를 통해 법익침해행위를 한 저연령자에 대한 국가 개입의 범위와 정도를 조정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확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은 보호처분이나 형벌을 수단으로 실질적 책임능력이 있는 소년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소년사법제도가 소년에게 단순한 은전을 베풀거나 형사책임으로부터 일률적으로 면제하려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의 조정 문제는 형법과 소년법의 관계와 기능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 단계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 우선, 오늘날의 연소자가 과거에 비해 통찰능력이나 조종능력, 또는 형벌에 대한 적응성이 현저히 향상되었다는 경험적 근거를 찾기 어려워 책임연령 인하의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물론 촉법소년의 촉법행위가 최근 양적·질적으로 증가하거나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일정 부분 타당해 보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더라도 실체법적·절차법적 측면에서 사회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향후 논의에서는 피상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에 머물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43) 실무에서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임의동행이나 출석요구를 통해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지명,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사법적 개입체계 정비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2018.
- 김 혁,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형사법연구* 제34권 제1호, 2022.
- _____, “경찰단계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증거확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제24권 제2호, 2016.
- _____, “뉴질랜드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4호, 2020.
- _____,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강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2호, 2023.
- _____,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의 재설계”, *피해자학연구* 제29권 제3호, 2021.
- _____,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변경과 이중처벌금지”, *비교형사법연구* 제22권 제1호, 2020.
- _____, “소년법의 연령과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2016.
- _____, “소년의 법률조력을 받을 권리와 보조인 제도의 재조명”, *형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2020.
- _____, “영국에서의 다이버전과 회복적 사법의 최근 동향 및 그 시사점”, *경찰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7.
- _____, “일본에서의 교정처우·교정교육과 피해자 관여에 관한 최근 동향”, *피해자학연구* 제31권 제1호, 2023.
- _____, “일본의 소년법제와 소년범죄 대응에 관한 분석적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37권 제1호, 2024.
- _____, “정신장애 의심자의 책임능력 및 형사제재의 판단구조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2017.
- _____, “캐나다 소년형사사법에서의 피해자의 법적 지위”, *동아법학* 제93호, 2021.
- _____, “피해자 중심적 소년사법·보호정책으로의 전환에 관한 시론”, *피해자학연구* 제28권 제3호, 2020.
- _____, “형사제재 내에서의 피해회복제도 도입에 관한 시론”, *비교형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2025.
- _____, “형사책임연령과 소년법 개정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19.
- _____, “호주 퀸즐랜드 소년사법에서의 피해자의 지위와 시사점”, *형사정책연구* 제35권 제2호, 2024.
- 박상기·전지연, *형법학(총론·각론 강의)* 제4판, 집현재, 2018.
- 배종대, *형법총론* 제11판, 홍문사, 2013.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2024.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25.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소년(보급판)*, 2014.
- 신동운, *형법 제·개정 자료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오영근, *형법총론* 제4판, 박영사, 2018.
-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미성년과 촉법소년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1호, 2012.
- 이승현, “촉법 소년 선별 송치 및 경찰 선도 제도 개선방안 연구”, *경찰청 사회적약자추진위원회 발표자료*, 2025.11.27.
- 최병각, “소년감경의 적용요건과 소송법적 효과”, *형사법연구* 제12호, 1999.
- 카와이데 토시히로, *소년법*, 박영사, 2016.

2. 일본문헌

- 久木元伸 외, *少年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及び少年審判規則等の一部を改正する規則の解説*, 法曹会, 2011.
- 堀内捷三, “責任の概念”, 西田典之·山口厚, *刑法の争点*第3版, 有斐閣, 2000.
- 渡邊一弘, “少年の刑事責任能力”, *刑法雑誌* 51卷2号, 2012.
- 山中敬一, *刑法総論II*, 成文堂, 1999.
- 佐伯仁志, “少年法の理念—保護処分と責任—”, 猪瀬慎一郎 외(편), *少年法のあらたな展開*, 有斐閣, 2001.



종합 토론

토론 1

촉법소년 연령 인하 쟁점에 대한 평가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2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토론문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3

중1, 보호만 할 것인가? 처벌도 가능하게 할 것인가?

- 처벌하되, 책임 있는 보호주의가 우선

정의롭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 4

토론문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토론 5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 일반예방과 규범효과의 관점에서 본 토론문 -

송종영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토론 6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에 대한 토론문

“촉법소년의 문제는 형사정책 문제인가, 복지정책 문제인가?”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토론 7

'면죄부'가 아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는 사법 정의의 실현

문덕주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사)

토론 8

소년재판실무에서 바라본 촉법소년 사건의 현황과 과제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 1



촉법소년 연령 인하 쟁점에 대한 평가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1

촉법소년 연령 인하 쟁점에 대한 평가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들어가며

이재명 정부의 국민 여론 수렴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본격화된 것에 대하여 반갑게 생각한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각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각자의 입장을 치열하게 논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포럼의 논의도 하나의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

발표자이신 김혁 교수님께서 형법과 소년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연령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계셔서 더이상 덧붙일 의견이 없다. 다만, 그동안 끊임없이 논의되었던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들을 중심으로 각각 논증하고 관련자료를 제시하면서 저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1. 촉법소년의 수 증가

수많은 언론보도에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수가 몇 배로 증가했는지를 강조해서 다루고 있다. 실제로 촉법소년의 수는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2019년~2022년)으로 소년사범에 유입되는 인원이 줄어들었던 시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데, 그 이전인 2019년 이전 수치와 비교해 보더라도 촉법소년의 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촉법소년의 수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촉법소년	9,606	11,677	16,435	19,653	20,814	14,563
범죄소년	64,579	54,067	61,112	66,500	61,729	-

출처: 경찰청 내부통계자료 및 경찰 통계연보 현황

첫째, 전체 소년범죄자 대비 촉법소년의 비율이 특별하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경찰에서 피의자로 분류되는 범죄소년 수 대비 촉법소년의 비율을 보면, 연도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촉법소년의 비율이 증가해감을 알 수 있다.

둘째, ‘13세’ 연령의 증가율 수치 비교가 적정한가? 최근 국무회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발언에서 “전체 보호

처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5% 정도이고, 12세는 약 5%로 나타나는데, 13세의 범죄율이 12세보다 약 3배 정도 급격히 높아진다.”라고 설명했다. 이 설명은 생애주기 범죄곡선을 유의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단순히 13세와 14세의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된다. 2025년 보호소년 처분 현황에서 13세가 4,613명으로 전체 보호소년의 14.9%를 차지하는 것은 맞다. 다만, 이 수치 중 촉법소년이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형사처벌을 논의해야 할 만큼 무거운 처분을 받은만한 대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표 2] 2024년 소년보호처분 연령별 현황(처분시)

구분	10세	11세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합계
보호소년	197	688	1,796	4,613	5,245	4,427	5,394	4,847	3,782	30,989

출처: 법원행정처(2025), 사법연감.

셋째, 다른 연령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에 대해 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2024년 법원 통계에서 살펴보면 여전히 16세~17세의 범죄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통계를 촉법소년 연령대에서만 비교를 하게 되면, 14세 이상의 범죄율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14세 이상 범죄소년의 전과 비율은 다양한 교정정책의 지속적 운영에도 불구하고 40%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전과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현재의 소년범 교정교육이 실효적이지 않거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먼저 진단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2. 촉법소년 범주의 흥포화

최근 언론보도와 법무부의 통계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흥포화’되었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범죄가 흥포화되었다는 표현을 쓸 때 주로 강력범죄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지고 비교하게 된다. 이에 촉법소년의 범죄유형을 강력범죄와 기타 범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3] 촉법소년의 범죄유형

(단위 : 명)

구분	계	강력범					절도	폭력	특별법 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2022	16,435	631 (3.8%)	1	15	557	58	7,874	4,075	3,855
2023	19,653	826 (4.2%)	3	7	760	56	9,406	4,863	4,558
2024	20,814	942 (4.5%)	-	11	883	48	10,418	4,873	4,581
2025.8	14,563	573 (3.9%)	-	6	500	67	7,181	3,664	3,145

출처: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내부 통계자료, 2025.10.

첫째,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의 비율이 일반 소년범죄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은 3.8%~4.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소년범죄자의 강력범죄 비율과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어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자 비율이 전체 소년범죄자의 강력범죄의 비율보다 특별히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둘째, 촉법소년 범죄의 절반은 절도범죄이고, 이 가운데 대다수는 무인점포·편의점 절도 등 단순절도 형태이다. 2024년 기준 경찰에서 처리한 소년범죄자 현황을 보면, 절도범의 비율이 15,182명으로 전체 소년범의 26.2%에 해당하고 있으나, 동년 촉법소년 전체 20,814명 중 절도범은 10,418명으로 50.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범죄소년보다 촉법소년에서 절도범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촉법소년의 경우 또래관계에 의한 범죄 성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무리를 지어 절도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범죄 유형으로 보면 ‘특수’ 절도로 보이나, 실제 범죄유형의 대다수는 무인점포에서 다수의 아이들이 무리지어 소액의 문구류나 과자류 등을 절취하는 행위 유형으로 대표되고 있다. 타인의 자전거나 퀵보드를 타고 다니다가 아무데나 버리고 가는 범죄유형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해 전전송치하는 현재의 법 체계에서 경찰단계에서 훈방 또는 즉심의 방법으로 경미범죄가 걸러지지 않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촉법소년의 성폭력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의 증가는 기존에 범죄화되지 않았던 영역의 범죄화와 맞물린다. 과거에는 카메라 이용촬영이나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범죄 등이 처벌되지 않는 영역이었으나, 최근 이들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경찰의 집중단속 등으로 체포·구속되는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범죄의 증가율은 범죄소년과 성인범에게서도 유사한 증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촉법소년에 대해 실제로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소년보호처분 유형별 통계만 제시하고 있을 뿐 연령별 보호처분 유형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 않아서 촉법소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판사 등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면,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가 경미하거나, 저연령이라서 처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심리불개시 또는 불처분 결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보호처분을 하더라도 보호자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1호 보호자감호위탁이나 2호 수강명령 등을 처분하고 있다고 응답했다.¹⁾ 법원의 소년보호처분 통계를 보면 증감률의 변화가 큰 항목을 살펴볼 수 있다. 바로 법원의 ‘심리불개시’와 ‘불처분’ 비율이다. 최근 10년간 법원의 ‘심리불개시’ 처분 수치는 2005년 7.2%에서 2024년 2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는 보호처분을 받지 않아도 될 대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와 같이 풀이될 수 있다.

1) 이승현 외, 소년범죄 처벌 실태 분석 및 처분·양형기준 도입방안 연구(I): 소년보호처분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표 4] 법원의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처분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검사 송치	타법원 이송 및 기타
2005	24,303 (100.0)	21,135 (87.0)	1,228 (5.1)	1,758 (7.2)	129 (0.5)	53 (0.2)
2006	25,262 (100.0)	20,241 (80.1)	1,512 (6.0)	3,344 (13.2)	50 (0.2)	115 (0.5)
2007	35,514 (100.0)	26,874 (75.7)	2,056 (5.8)	5,957 (16.8)	67 (0.2)	560 (1.6)
2008	39,532 (100.0)	30,222 (76.4)	2,020 (5.1)	6,801 (17.2)	152 (0.4)	337 (0.9)
2009	47,865 (100.0)	35,819 (74.8)	3,041 (6.4)	7,377 (15.4)	394 (0.8)	1,234 (2.6)
2010	45,090 (100.0)	32,416 (71.9)	3,105 (6.9)	7,338 (16.3)	391 (0.9)	1,840 (4.1)
2011	48,713 (100.0)	35,072 (72.0)	2,579 (5.3)	7,905 (16.2)	621 (1.3)	2,536 (5.2)
2012	50,771 (100.0)	36,150 (71.2)	2,278 (4.5)	9,209 (18.1)	693 (1.4)	2,441 (4.8)
2013	45,393 (100.0)	31,952 (70.4)	2,663 (5.8)	8,065 (17.8)	534 (1.2)	2,179 (4.8)
2014	34,600 (100.0)	24,529 (70.9)	2,543 (7.3)	5,669 (16.4)	456 (1.3)	1,403 (4.1)
2015	35,920 (100.0)	25,911 (72.1)	2,763 (7.7)	5,703 (15.9)	450 (1.3)	1,093 (3.0)
2016	33,142 (100.0)	23,526 (71.0)	2,650 (8.0)	5,547 (16.7)	313 (0.9)	1,106 (3.4)
2017	34,474 (100.0)	24,383 (70.7)	2,985 (8.6)	5,676 (16.5)	370 (1.1)	1,060 (3.1)
2018	34,276 (100.0)	24,494 (71.5)	2,805 (8.2)	5,590 (16.3)	305 (0.9)	1,082 (3.2)
2019	34,890 (100.0)	24,131 (69.2)	2,557 (7.3)	6,556 (18.8)	351 (1.0)	1,295 (3.7)
2020	38,293 (100.0)	25,579 (66.8)	2,886 (7.5)	7,948 (20.7)	364 (1.0)	1,516 (4.0)
2021	35,064 (100.0)	22,144 (63.2)	2,728 (7.8)	8,586 (24.5)	191 (0.5)	1,415 (4.0)
2022	40,319 (100.0)	24,933 (61.8)	2,923 (7.2)	10,874 (27.0)	235 (0.6)	1,354 (3.4)
2023	49,444 (100.0)	30,253 (61.2)	3,837 (7.7)	13,531 (27.4)	229 (0.5)	1,594 (3.2)
2024	51,020 (100.0)	30,989 (60.7)	3,720 (7.3)	14,486 (28.4)	157 (0.3)	1,668 (3.3)

자료: 법원행정처(2006~2025), 사법연감.

3. 촉법소년의 형사처벌에 대한 인식

다수의 언론보도에서 “나 촉법소년이야”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촉법소년이 대부분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처벌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행위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형사처벌의 여부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통제하고, 자신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행위였는지 즉, 책임능력이 있는 행위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행위는 촉법소년 스스로 범죄행위를 스스로 통제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위였다고 보기 어렵다.

촉법소년의 행위 대부분은 또래 관계에 의한 유인, 호기심에 의한 장난으로 대표된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등 온라인범죄에서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되지 않음을 악용하여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주로 범죄행위가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 의한 행위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촉법소년이 처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촉법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이 하향되어야 한다는 논거 중의 하나는 바로 신체적·정신적 성숙도라 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청소년 신체적 성숙은 과거보다 조기화되었고, 발육 상태도 향상되었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의 영양상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공중보건의 발달하면서 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은 개선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분석한 <한국인 인체 지수 조사>에 따르면, 1960년대 고등학생 3학년의 평균 키는 163~164cm였으나 2023년 고등학교 남학생 평균 키는 174.4cm로 10cm 이상 증가하였다. 여학생의 초경 연령도 과거보다 앞선 현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청소년이 과거보다 정신적으로 성숙되었는가? 디지털 정보가 무한대로 제공되고 있는 현재 청소년의 정보 접근은 확실히 과거보다 많아졌다. 하지만 청소년이 인식하는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법적 책임을 인식하는 정신적 성숙도와 연결될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든다. 정보의 습득 능력은 발달했으나, 청소년이 정보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비판적 수용 능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래에 의한 영향, 정서의 조절 능력이나 충동억제력은 신체 발달에 비례하여 성장하지 못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증거기반 연구의 검토와 전망> 논문에서도 뇌과학 증거(fMRI)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사회적·정서적 신호에 민감하긴 하나, 인지조절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자료들을 제시한 바 있다.²⁾

미국의 신경영상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기능별로 크게 작업기억, 처리속도, 반응(충동)억제를 제어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기능은 각각 다른 발달속도를 갖는다고 한다.³⁾ 처리 속도나 반응

2) 박성훈/박신의,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증거기반(evidence-based) 연구의 검토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3. p.1 이하.

3) Beatriz Luna et al., “Maturation of cognitive processes from late childhood to adulthood”, Child Development, 75(5), 2004, p.1368-1369

(충동)억제 부분은 14-15세를 전후하여 발달하지만, 작업기억과 상호의존적인 반응(충동)억제 부분은 작업 기억 부분의 성숙이 완성되는 19세를 전후하여 비로소 발달이 완료된다.⁴⁾ 즉, 피질-선조체-시상-소뇌의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충동·행동 조절이 소년의 경우 아직 미성숙한 피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성인보다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⁵⁾

5. 외국의 형사처벌 판단기준

다수의 연구 및 정책자료에서는 각국의 형사처벌 연령 기준만을 다루고 있다. 미국은 7세부터 16세, 영국은 10세, 일본과 독일은 14세라는 기준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자료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법조와 절차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연령 기준과 실제 형사처벌 기준은 다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을 10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뇌의 발달상황과 생애범죄곡선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Roper v. Simmons* 사건에서 “소년은 성인보다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외부영향에 취약하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과 성인보다 재사회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16세 이상에 대한 사형을 합헌이라고 판시했던 *Standford v. Kentucky* 판결을 뒤집고 위헌 판단을 하였다.⁶⁾

영국의 경우 형사처벌 연령기준이 10세로 되어 있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자국의 소년사법 정책의 목적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며 10세 이후의 소년비행에 대하여 장래의 범죄 예방과 소년의 복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최우선하여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소년사법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책임 연령을 상향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에 있다.⁷⁾ 실제로 영국의 소년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소년이 주변의 상황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로 인식하여 소년의 성장 환경과 배경에 대한 조사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불우한 환경에 있는 소년에게는 엄벌보다 복지체계로의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⁸⁾ 소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앞서 가정환경이 소년에 대하여 지지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 보호자의 보호력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소년의 범죄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을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4) Beatriz Luna et al., “Maturation of cognitive processes from late childhood to adulthood”, *Child Development*, 75(5), 2004. p.1357

5) Beatriz Luna et al., “Maturation of cognitive processes from late childhood to adulthood”, *Child Development*, 75(5), 2004. p.1367-1368

6) 이승현 외, 소년범죄 처벌 실태 분석 및 처분·양형기준 도입방안 연구(II): 소년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 p.328-344.

7) House of Commons Justice Committee,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ustody (Part 1): Entry into the youth justice system: Government Response to Committee’s Twelfth Report of Session 2019-21”, p.8-9.
<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4636/documents/46905/default/>, (2025.8.17. 최종검색)

8) 이승현 외, 소년범죄 처벌 실태 분석 및 처분·양형기준 도입방안 연구(II): 소년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5.

독일의 경우 14세 기준은 우리와 동일하나, 형사처벌 대상을 선별함에 있어서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상인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교정교육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시설 내 처우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외국에서도 소년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연령을 하향하자는 논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연령 인하가 이루어진 국가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준에 우리나라보다 형사처벌 연령이 높았거나, 우리보다 낮았으나 상향하려는 국가들의 사례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형사책임연령을 정하고 있던 스코틀랜드에서도 2019년 형사책임연령(스코틀랜드)법(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Scotland) Act 2019)이 2021년 완전히 시행되면서 기존의 8세에서 12세로 형사책임연령을 상향하였다.⁹⁾ 영국에서도 형사책임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¹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처벌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삼고 있는 국가에 대해 14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덴마크는 2010년 형사처벌 연령을 15세로 14세로 낮추었다가 오히려 재범률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2012년 다시 15세로 연령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6. 형사처벌의 재범방지 효과

해외의 다수 연구 결과들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형사처벌을 통한 처벌 효과보다는 사회 격리로 인한 낙인과 범죄학습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덴마크의 연령 인하 개혁이 재범방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14세 청소년의 범죄 발생가능성을 줄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개혁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보고된 소년범죄 건수는 증가하였으며, 과거 전과가 있는 14세 소년에게서 범죄율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보고했다. 또한 13세와 15세 집단의 범죄율에도 개혁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¹¹⁾ 이전의 다수 연구 결과에서 제시하듯이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tough-on-crime)은 범죄감소에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었다.

9) Scottish Government, "Youth justice-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https://www.gov.scot/policies/youth-justice/raising-age-criminal-responsibility/>, (2025.8.17. 최종검색)

10) Guardian,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must be raised, say experts", 4 November 2019.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19/nov/04/age-of-criminal-responsibility-must-be-raised-say-experts>, (2025.8.17. 최종검색)

11) Anna Piil Damm, Britt Østergaard Larsen, Helena Skyt Nielsen, Marianne Simonsen(2025), "Lowering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Consequences for Juvenile Crime and Education",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Volume 41, pp.495~521.

나오며

현재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마치 연령 한 살을 낮출지 말지의 논의로 치부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의 문제는 단순히 연령 기준 하나의 변경 문제가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행에 빠진 소년임을 차별하는가 차별하지 않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를 국민 여론의 방향에 맞추어 결정되지 않도록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대안을 도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인구절벽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학교에서 매년 줄어가는 학급의 수도 실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혼장려, 출산장려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현재 우리 사회에 함께 살고 있는 비행청소년의 모습을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과 온라인으로 범죄에 노출될 기회는 늘어가고, 가정환경과 학교의 관심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아이 스스로 잘 키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 현장에서 20년간 만난 소년범들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가정의 보호를 충실히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고, 정서적으로 궁핍한 아이들이었다. 이들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전에 우리 사회는 그동안 청소년이 비행에 빠질 만한 위기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는지, 가정과 학교는 충실히 보호자로서 역할을 해왔는지, 현재 소년범에 대한 교정교육은 충실하게 했는지를 먼저 성찰해 보아야 한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 2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토론문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토론문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촉법소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일반 시민들의 소년법에 대한 불신이 소년법이 소년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하는 법이라는 인식과 소년법의 목적 속에 피해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발제자의 추론에 동의하는 바이다. 본 토론문에서는 촉법소년의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흉악해지는데 처벌은 약하다는 주장에 대해 그 근거를 살펴보고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이해 |

먼저, 형사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에 대해 살펴보자. 소년사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들여다 보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14세임에도 불구하고 14세 미만의 행위에 대해 국가의 제재가 전무하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10세 이상의 소년은 소년원에 송치가 가능하고, 장기 소년원 송치도 12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과 처분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시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그 기능을 대행하는 소년원에 위탁되어 개인의 신병을 제한할 수도 있다. 법원행정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원 처벌이 형사처벌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국내법에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형벌의 대안적 수단인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형사제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형사책임연령은 14세가 아니라 10세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였다(자료 1 참고). 발제자 역시 보호처분의 “교육 내지 보호는 형사제재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처우의 목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지, 순수한 복지 내지 교육적 성격의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 형사책임능력의 본질 |

다음으로, 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성숙해졌고 촉법소년의 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자. 형사미성년자 연령 상한을 만 14세로 규정한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이 신체적으로 성숙하였으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성인도 키나 몸무게로 양형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 또한,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민법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 연령보다 낮다. 타법으로는 혼인, 투표, 근로할 권리를 제한받으나 형법상으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이다. 미성숙을 근거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듯이 책임을 제한하는 것도 같은 원리로 보아야 한다. 발제자가 지적하였듯이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는 “지금보다 현저히 어린 나이에 경제 활동을 시작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고도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 즉 사회가 요구하는 정신적 성장 기간이 훨씬 길어졌다. 의무교육 과정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도 이와 같은 점이 고려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 3학년은 보통 만 14~15세 연령에 해당한다.

| 접수건수와 처리건수 |

소년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흉포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로 제시된 통계를 소년범죄관련 통계가 생산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뜯어보고자 한다. 법무부는 21대 국회에 정부안으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2022. 12. 28.)하기 전에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2022. 10. 26.). 당시 법무부가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흉포화의 근거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출처가 경찰청, 대검찰청, 대법원으로 자료마다 차이를 알 수 있다. 또한, 촉법소년에 대한 통계와 소년범죄 전체에 대한 통계도 혼용해서 쓰고 있다. 경찰은 촉법소년의 사건은 전부 법원으로 송치해야 하고 피의자 원표 작성의 의무가 없어 경찰청이 발행하는 「범죄통계」에서도 14세 이상만을 집계하여 공표한다. 검찰은 형사미성년자의 사건은 다루지 않으므로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역시 14세 이상만을 집계하여 공표한다.¹⁾ 결국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사건을 모두 다루는 기관은 법원으로,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이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지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러나 법원 통계 역시 법무부가 인용한 ‘접수건수’가 아닌 처리건수의 세부 사항을 보아야 해당 사건의 경중과 행위의 위법 또는 촉법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한민경(2022)의 말처럼 촉법소년 접수건수는 경찰활동 등 소년사법체계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건수만으로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단언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은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모두 제공하나 연령별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재가공하여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분석하고, 법원행정처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촉법소년의 처리건수를 별도로 분석한 바 있다(박지수, 이지연, 한윤선, 김혁, 2023). 해당 자료에 최신 자료를 덧붙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소년보호사건 전체로도 보호처분 결정은 감소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은 증가하고 있으며(자료 2-그림 2), 촉법소년의 경우 2024년 기준 전체사건의 49.2%만이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반면, 심리불개시 결정은 점점 증가하여 43.0%에 이르는 수 있다(자료 2-그림 3). 일상의 사법화 또는 학교의 사법화와 무관하지 않은 수치라고 추론해 볼 여지가 충분한 분석 결과이다.

1) 이지연 외(2024)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통계와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모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사건도 일부 집계되었으나 이는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원표 작성의 의무가 없어 임의로 수집된 자료이므로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없다(경찰청 범죄통계 기준 촉법소년 2013년 281명, 2014년 54명, 2015년 80명, 2016년 78명, 2017년 88명)

| 성폭력 범죄의 세부유형 |

소년범죄의 흉포화에 대한 주장은 성폭력범죄의 증가를 근거로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범죄는 경찰, 검찰, 법원이 분류하는 방식이 상이하다. 우선, 경찰의 「범죄통계」는 직접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의 네 개 범주로 ‘물리적 성비행’을 구분하며, 대부분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않아 ‘디지털 성비행’으로 볼 수 있는 성폭속범죄를 풍속범죄 대분류 하에 두고 있다. 성범죄를 물리적성비행과 성폭속범죄로 나누어서 보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미성년자의 성범죄는 물리적 성비행이 아닌 성폭속범죄임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 2-그림 4). 검찰의 「범죄분석」은 물리적 성비행과 디지털 성비행을 한데 묶어 ‘강력범죄(흉악)’의 성폭력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범죄의 종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검찰 통계에서는 물리적 성비행과 디지털 성비행을 합한 성폭력의 증가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4대 강력범죄 중 성폭력을 제외한 살인, 강도, 방화는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자료 2-그림 6). 그러나 경찰과 검찰의 통계에는 촉법소년 관련 건수가 집계되지 않으므로 촉법소년의 범죄가 흉포화되었다는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두 기관의 통계를 살펴볼 때, 검찰이 4대 강력범죄(흉악)로 집계하는 성폭력 범죄를 뜯어보면 경찰 기준의 성폭속범죄가 상당 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법원의 「사법연감」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나누어 제시하며, 소년보호사건에는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관련 수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성비행 관련 죄명은 형법범 중 강간, 강제추행, 특별법범 중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5개이며,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명으로 묶어두어 해당 법률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물리적 성비행과 디지털 성비행을 나누어 살펴볼 수 없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성비행 관련 죄명은 형법범 중 강간, 강제추행, 특별법범 중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4개이며, 최근 연도의 사법연감은 중요 죄명에 성매매처벌법은 제외하고 있다. 강력범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강간의 증가폭에 비해 강제추행의 증가폭이 눈에 띄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 2-그림 8). 처리건수는 공개되지 않아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소년의 재범방지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소년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특히 일부 자극적인 언론보도나 맥락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통계의 일방적 전달이 소년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과도한 불안이나 소년들에 대한 혐오감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하려는 다양한 시도도 이러한 노력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소년보호처분과 소년형사처분이 특별예방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소년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여 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로 복귀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결국 소년법이 우리 사회 전체에 가져다 줄 법익일 것이다.

■ 참고자료

- 경찰청(2013~2024). **범죄통계**. https://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115&stnColumn2=%EB%85%84%EB%8F%84에서 2026년 1월 20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2022. 10. 2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및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 표명).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id=7608440&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6년 1월 19일 인출.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2023).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제40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한석현.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T2U2N1Z2O2P8T1T7O0J5O1H7D6O6M0&ageFrom=21&ageTo=21에서 2026년 1월 19일 인출.
- 대검찰청(2014~2025). **범죄분석**. <https://www.spo.go.kr/site/spo/crimeAnalysis.do>에서 2026년 1월 20일 인출.
- 박지수, 이지연, 한윤선, 김혁(2023). **보호소년 범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소년보호재판 및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으로(연구보고23-기본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무부(2022. 10. 26.).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https://www.moj.go.kr/bbs/moj/182/564175/artclView.do>에서 2026년 3월 12일 인출.
- 법원행정처(2014~2025). **사법연감**.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ListAction.work?gubun=719>에서 2026년 3월 12일 인출.
- 이지연, 김영지, 박지수, 한윤선, 박선영(2024).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연구보고24-기본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민경(2022).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인식에의 영향요인: 소년사법 실무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5(2), 257-284.
- 한민경(2024). 공식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성비행의 경향 및 특성. **2024 소년보호실무학회연구회 워크숍 자료집**.

자료 1

법사위 검토보고서 및 인권위 결정문

□ 21대 국회 정부안 법사위 검토보고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23. 2. 전문위원 한석현)에서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14→13세)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찬성 입장

-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수법이 흉포화**
-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현재의 소년은 **신체적으로 성숙**
-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성년(20→19세), 선거권(20→18세) 등 **각종 연령기준 하향**
- 소년범죄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필요**
- (법무부) 보호처분이 13세부터 확연히 증가, 우리나라 학제가 13세 기준으로 구분

◦ 반대 입장

-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증가나 흉포화를 명확하게 **뒷받침할 만한 통계 부족**
- **성장 중에 있는 아동**은 개선가능성이 크며, 「소년법」취지는 처벌이 아닌 교화
- **국제인권기준**이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14세로 권고
- 단순한 처벌의 강화는 교도소 내 범죄 학습, 부정적 낙인 효과 등으로 **효과적인 대책이 아님**

◦ 법원행정처 의견(반대)

-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형법 벌령 저촉행위를 한 13세 소년에 대해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 입각한 처벌을 부과하기보다는 다양한 보호처분의 활용을 통한 **신속한 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법상 13세 소년에게 부과되는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에 비하여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음**
- 13세 소년이 형법 벌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 발달과정에 있으며 회복 가능성과 잠재능력을 보유한 아동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아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형사사법 체계
- (국제인권기준) UNCRC 2019년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전해(CRC/C/LOR/CO/5-6)를 통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하고, 만 14세 아동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구금하지 않을 것”**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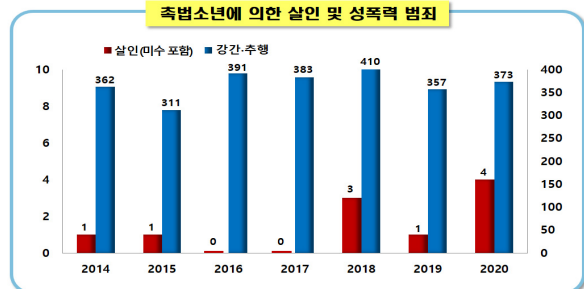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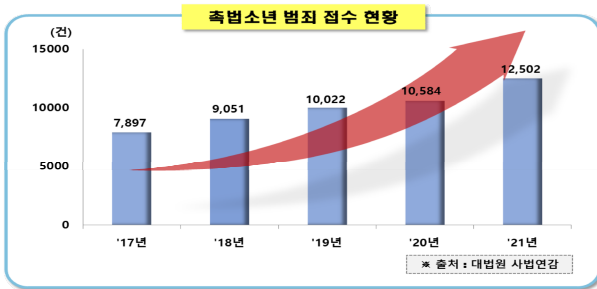
- **(아동 발달 및 신경과학 분야의 증거 자료)** 12~13세 아동은 전두엽 피질이 아직 발달 중인바 성숙과 추상적 추론 능력이 여전히 발달과정에 있어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나 사법절차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청소년기는 급속한 두뇌 발달을 특징으로 하는 독특하고 **결정적인 인간 발달 단계**이며, 이는 위험 관리, 특정 종류의 의사결정, 충동 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침
- **(예외 없는 표준 형사책임 최저연령 강력 권고)** 아동이 심각한 범행의 피의자인 경우 형사책임의 최저연령을 더 낮게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 표명. 이러한 관행은 일반적으로 대중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고 아동의 발달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음
- (해외입법례) 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은 국가별 단순비교가 아니라 각국의 소년사법제도 특성을 고려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함. 국내법에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도 형벌의 대안적 수단인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형사제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형사책임연령은 14세가 아니라 10세라고 볼 여지도 있음**

자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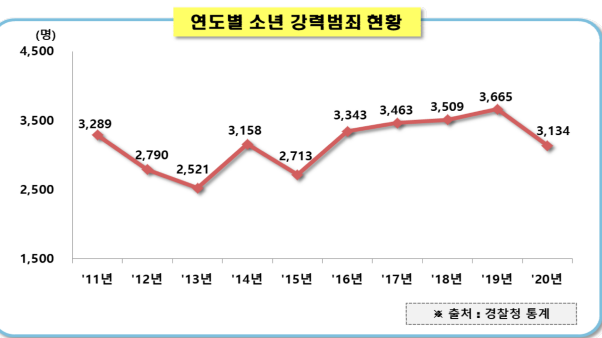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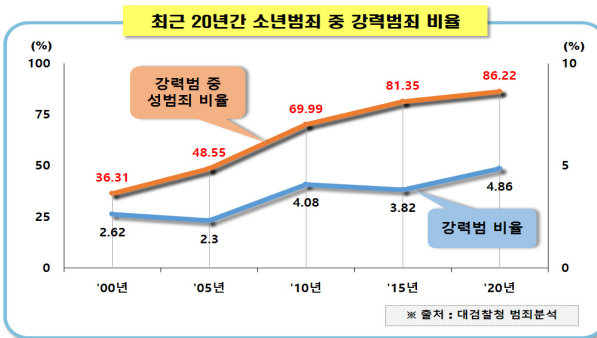
쟁점: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흉포화

□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흉포화 주장 근거 (법무부 2022. 10. 26. 보도자료 발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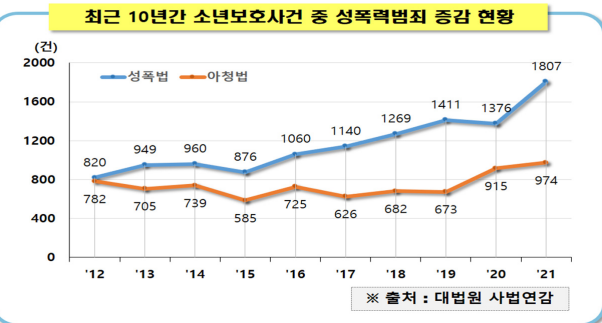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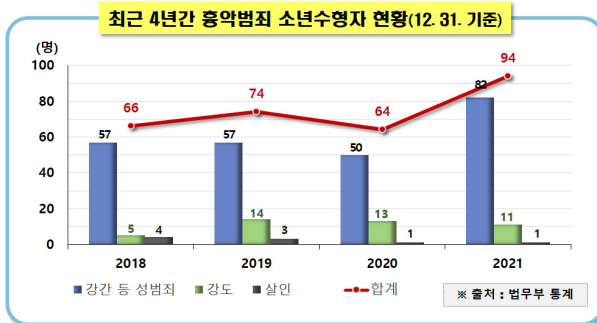
-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매년 증가 추세 ('17년 7,897건 → '21년 12,502건)
-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14년~'20년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 10명)



- 소년 강력범죄의 비율이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최근 10년간 14~18세의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약 2,500 ~ 3,700건 발생(소년 마약사범도 '17년 68명 → '21년 271명으로 급증)
-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05년 평균 2.3% 수준이었으나 최근 4.86%에 이르렀고, 특히 소년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00년 36.3% → '20년 86.2%로 급증



- 흉악범죄 소년수형자도 증가 추세('18년 66명 → '21년 94명)에 있고, 특히 '21년 소년보호사건 중 성폭법 위반 건수는 전년 대비 31.3% 증가('20년 1,376건 → '21년 1,807건)



□ 촉법소년 범죄 증가 및 흉포화 주장 반박 근거

-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은 연령별로 구분하여 촉법소년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나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공표하기 때문에 처리건수와 미제건수와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움. 촉법소년 접수건수는 경찰활동 등 소년사법체계 내·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건수만으로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단언할 수 없음(한민경, 2022)
- **(처분별 건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을 재가공하여 접수건수와 처리건수를 분석하고, 법원행정처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촉법소년의 처리건수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박지수, 이지연, 한윤선, 김혁, 2023)
 - 소년보호사건 전체로도 보호처분 결정은 감소하고 심리불개시 결정은 증가하고 있으며, 촉법소년의 경우 2024년 기준 전체사건의 49.2%만이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진 반면, **심리불개시 결정은 점점 증가**하여 43.0%에 이름
- **(성범죄 분류 기준)** 성범죄는 경찰, 검찰, 법원이 분류하는 방식이 상이
 - **경찰의 <범죄통계>**는 직접 신체접촉을 수반하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등의 네 개 범주로 ‘**물리적 성비행**’을 구분하며, 대부분 신체접촉을 수반하지 않아 ‘**디지털 성비행**’으로 볼 수 있는 성풍속범죄²⁾를 풍속범죄 대분류 하에 두고 있음
 - **검찰의 <범죄분석>**은 물리적 성비행과 디지털 성비행을 한데 묶어 ‘**강력범죄(흉악)**’의 성폭력³⁾으로 파악하며, **촉법소년 관련 수치는 제외되어 있음**. 이 외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알선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이하 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등)(이하 성착취물등)이 있음
 - **법원의 <사법연감>**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나누어 제시하며, 소년보호사건에는 **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 관련 수치가 모두 포함되어 있음**
 - 소년보호사건에서 성비행 관련 죄명은 형법범 중 강간, 강제추행, 특별법범 중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5개이며,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명으로 묶어두어 해당 법률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물리적 성비행과 디지털 성비행을 나누어 살펴볼 수 없음
 - 소년형사사건에서 성비행 관련 죄명은 형법범 중 강간, 강제추행, 특별법범 중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4개이며, 최근 연도의 사법연감은 중요 죄명에 성매매처벌법은 제외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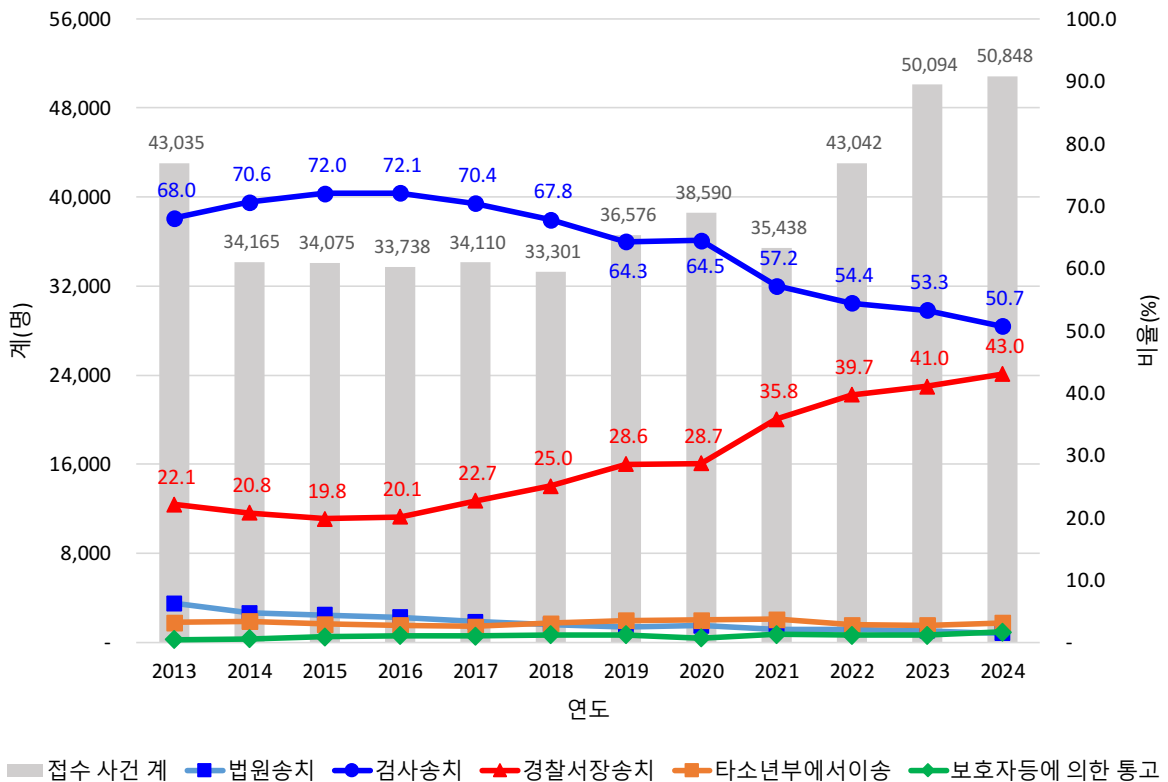
2)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위반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처벌법위반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위반 제14조의2(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등이 성풍속범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죄명

3) [중분류] 강력범죄(흉악) - [소분류] 성폭력 - [세분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표 1. 소년보호사건 접수 동향(2013~2024)

구분	접수사건 계	법원송치	검사송치	경찰서장송치	타소년부 이송	보호자 등 통고
2013	43,035	2,695	29,284	9,500	1,368	188
2014	34,165	1,610	24,110	7,104	1,146	195
2015	34,075	1,494	24,527	6,756	989	309
2016	33,738	1,357	24,319	6,788	915	359
2017	34,110	1,124	24,014	7,743	876	353
2018	33,301	954	22,578	8,335	1,027	407
2019	36,576	876	23,511	10,460	1,285	444
2020	38,590	1,023	24,872	11,063	1,362	270
2021	35,438	733	20,260	12,680	1,307	458
2022	43,042	863	23,408	17,076	1,193	502
2023	50,094	909	26,685	20,548	1,382	570
2024	50,848	747	25,766	21,887	1,596	852

* 출처: 박지수 외(2023) <표 II-12> 수정 (자료: 법원행정처(2014~2025). 사법연감.)



* 출처: 박지수 외(2023) <그림 II-3> 수정 (자료: 법원행정처(2014~2025).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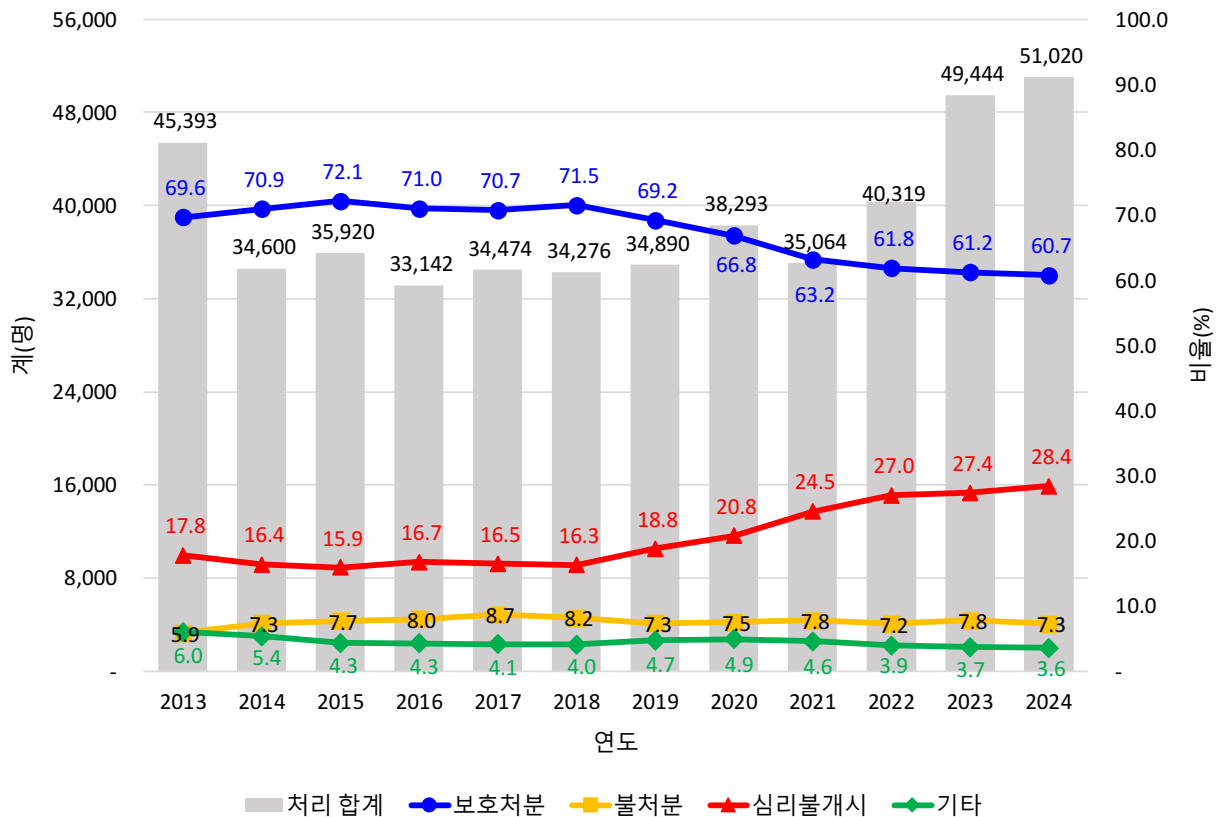
그림 1. 소년보호사건 접수 동향(2013~2024)

표 2. 소년보호사건 처리 동향(2013~2024)

구분	처리 합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기타
2013	45,393	31,592	2,663	8,065	2,713
2014	34,600	24,529	2,543	5,669	1,859
2015	35,920	25,911	2,763	5,703	1,543
2016	33,142	23,526	2,650	5,547	1,419
2017	34,474	24,383	2,986	5,676	1,429
2018	34,276	24,494	2,805	5,590	1,387
2019	34,890	24,131	2,557	6,556	1,646
2020	38,293	25,579	2,886	7,948	1,880
2021	35,064	22,144	2,728	8,586	1,606
2022	40,319	24,933	2,923	10,874	1,589
2023	49,444	30,253	3,837	13,531	1,823
2024	51,020	30,989	3,720	14,486	1,825

* 출처: 박지수 외(2023) <표 II-14> 수정 (자료: 법원행정처(2014~2025). 사법연감.)

* 주: 기타는 타법원에 이송, 검사에게 송치, 기타를 합하여 보고함



* 출처: 박지수 외(2023) <그림 II-5> 수정 (자료: 법원행정처(2014~2025). 사법연감. 연구진 재가공)

* 주: 기타는 타법원에 이송, 검사에게 송치, 기타를 합하여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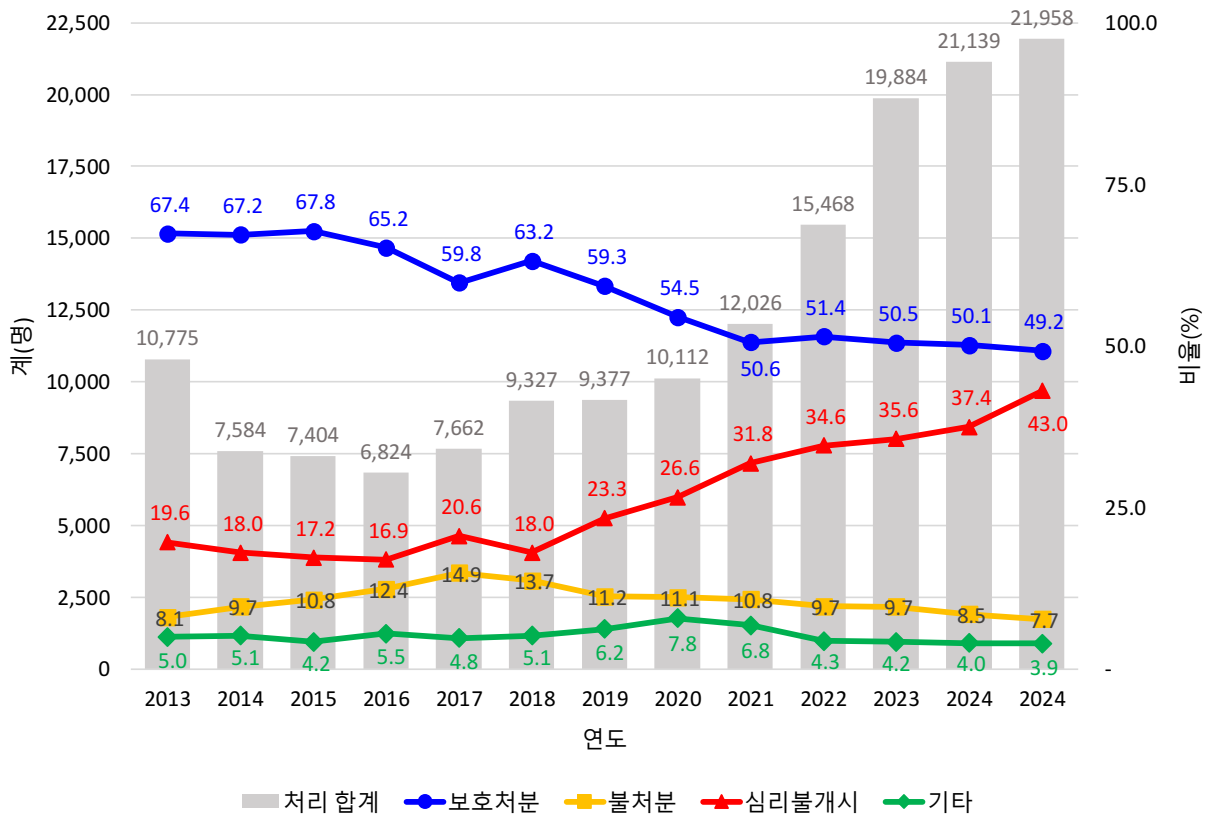
그림 2. 소년보호사건 처리 동향(2013~2024)

표 3.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처리 동향(2013~2024)

구분	처리 합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기타
2013	10,775	7,258	869	2,113	535
2014	7,584	5,095	732	1,367	390
2015	7,404	5,019	796	1,277	312
2016	6,824	4,450	845	1,154	375
2017	7,662	4,581	1,138	1,577	366
2018	9,327	5,891	1,275	1,681	480
2019	9,377	5,559	1,051	2,186	581
2020	10,112	5,508	1,125	2,688	791
2021	12,026	6,082	1,300	3,829	815
2022	15,468	7,956	1,502	5,345	665
2023	19,884	10,040	1,920	7,082	842
2024	21,139	10,588	1,793	7,914	844

* 출처: 박지수 외(2023) <표 II-16> 수정 (자료: 법원행정처(2014~2025).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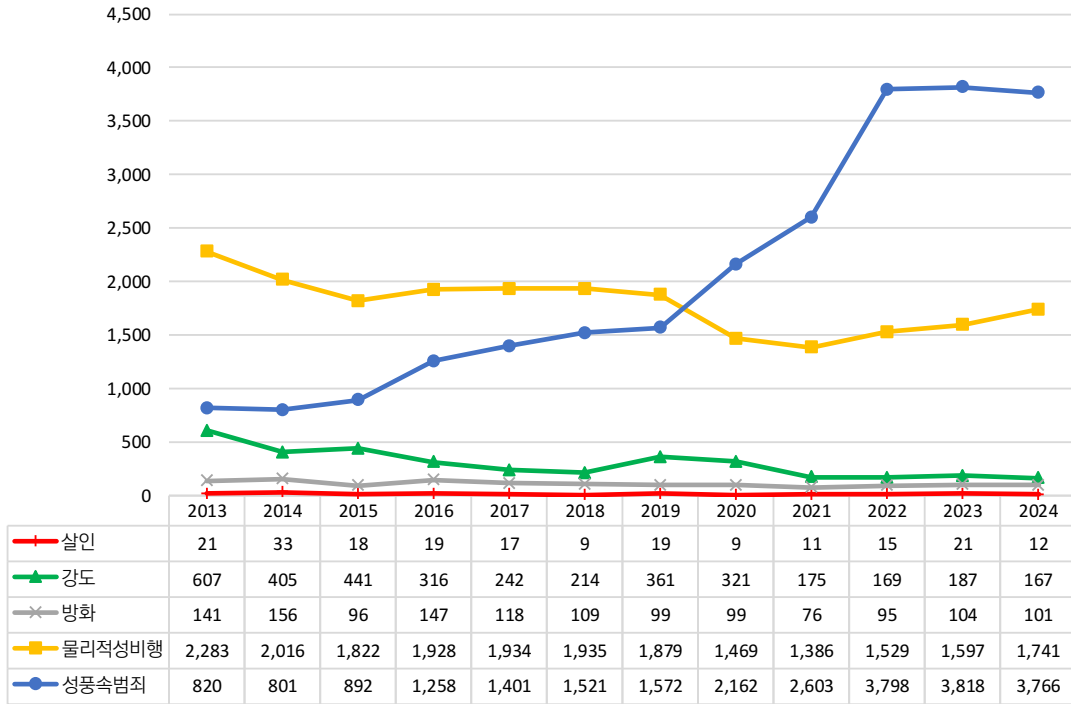
* 주: 기타는 타법원에 이송, 검사에게 송치, 기타를 합하여 보고함



* 출처: 박지수 외(2023) <그림 II-6> 수정 (자료: 법원행정처(2014~2025).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촉법소년) 내부 전산자료. 연구진 재가공)

* 주: 기타는 타법원에 이송, 검사에게 송치, 기타를 합하여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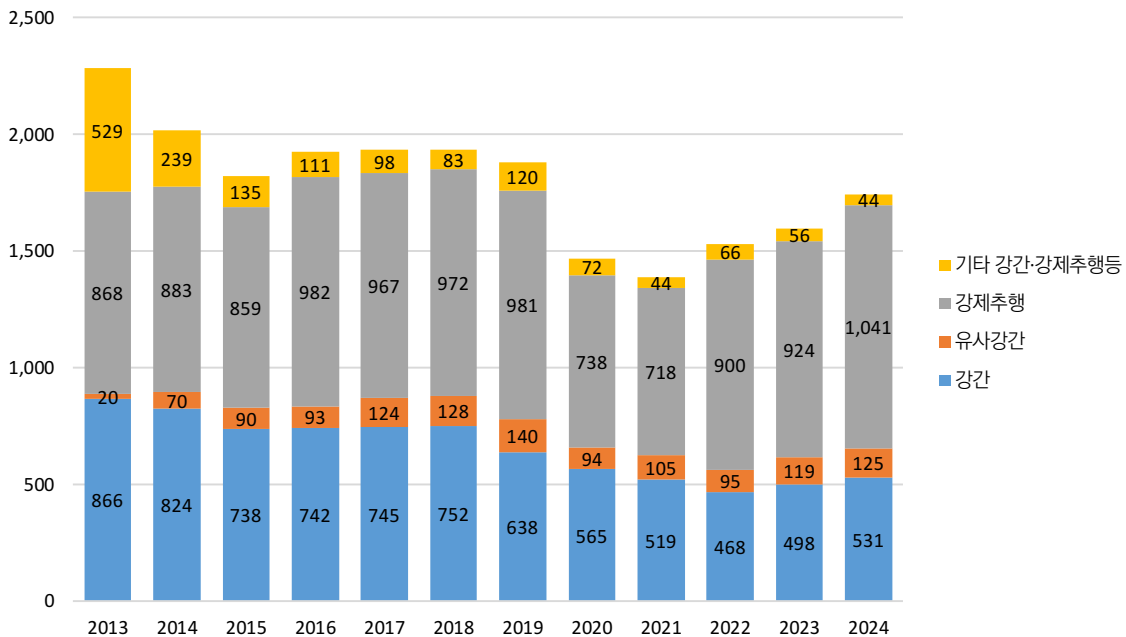
그림 3. 소년보호사건 촉법소년 처리 동향(2013~2024)



* 출처: 한민경(2024). 공식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성비행의 경향 및 특성. 2024 소년보호실무학회연구회 워크숍 자료집. (자료: 경찰청, 미성년피의자 범행시 전과 여부 및 횟수(표 V-2-2), <범죄통계>, 각년도. 2024년 최신자료를 저자가 추가하여 수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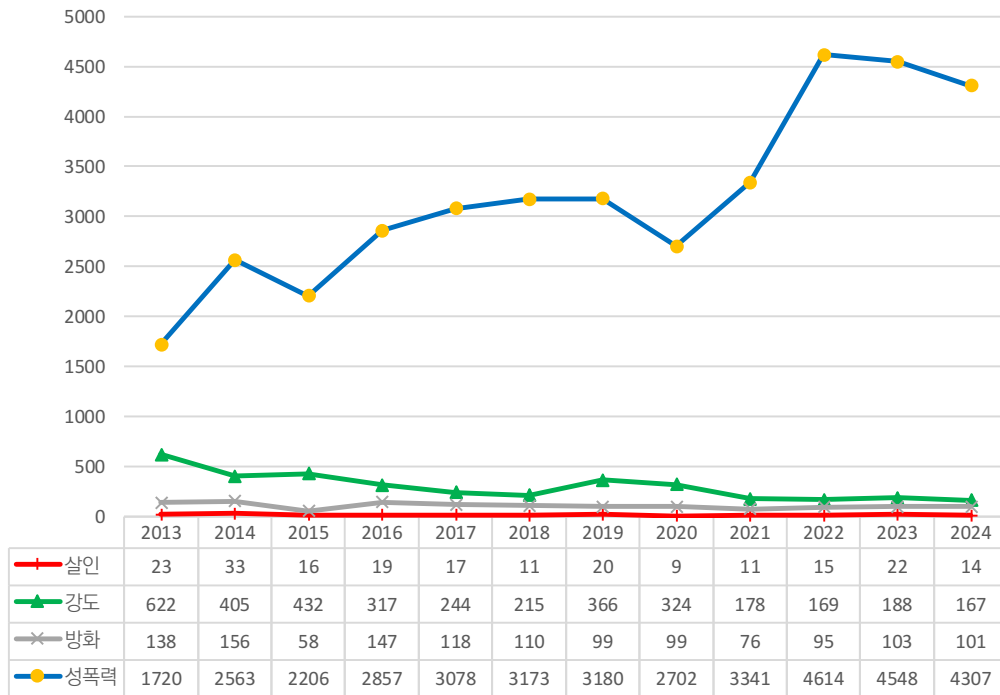
* 주1: 물리적성비행: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기타 강간-강제추행등
 주2: 성풍속범죄: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14조(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제14조의2(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등

그림 4. 경찰 <범죄통계> 상의 미성년자 강력범죄 및 성풍속범죄(2013~2024)



* 출처: 그림 4와 같음

그림 5. 경찰 <범죄통계> 상의 미성년자 강력범죄 중 물리적 성비행 발생 현황(2013~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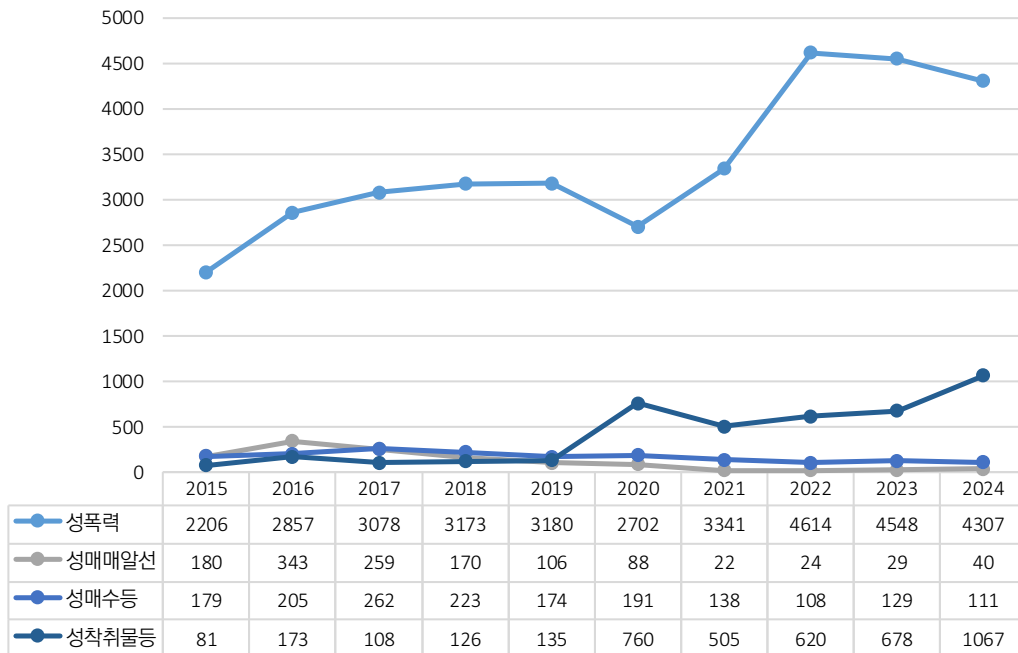


* 출처: 한민경(2024). 공식통계에 나타난 청소년 성비행의 경향 및 특성. 2024 소년보호실무학회연구회 워크숍 자료집. (자료: 검찰, 범죄자 연령(표 3-1-2-B), <범죄분석>, 각년도. 2013, 2014, 2023, 2024 자료를 발제자가 추가하여 수정함)

* 주1: 성폭력 세분류: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주2: 2015년부터 <범죄분석>이 개편되었으므로 2013년과 2014년 자료는 시계열 비교에 주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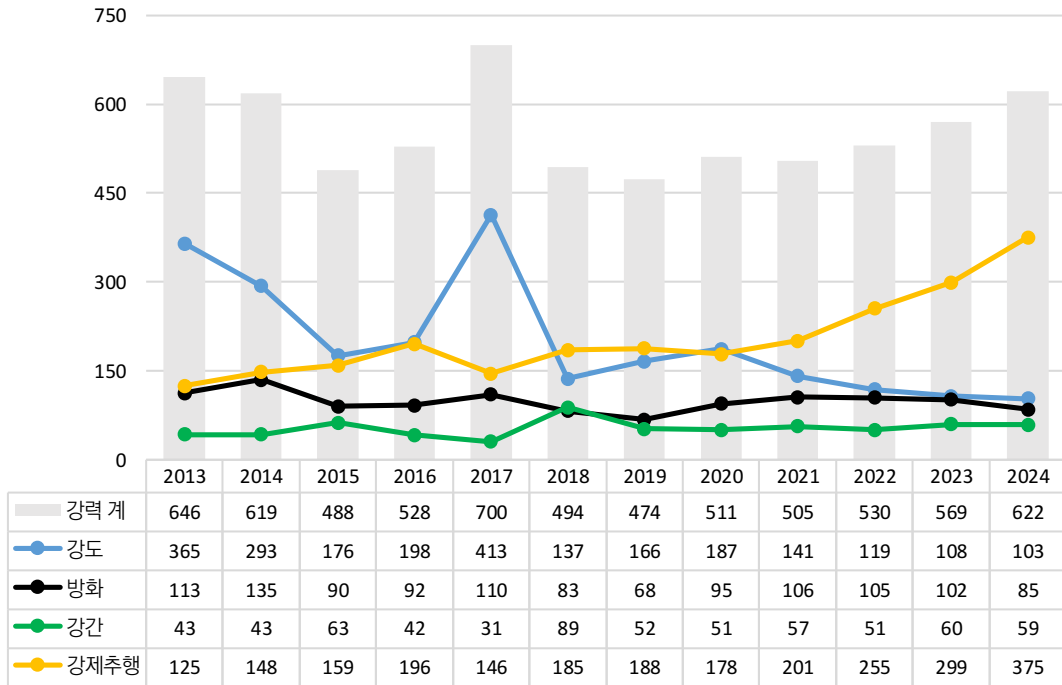
그림 6. 검찰 <범죄분석> 상의 미성년자 강력범죄(흉악)(2013~2024)



* 출처: 그림 6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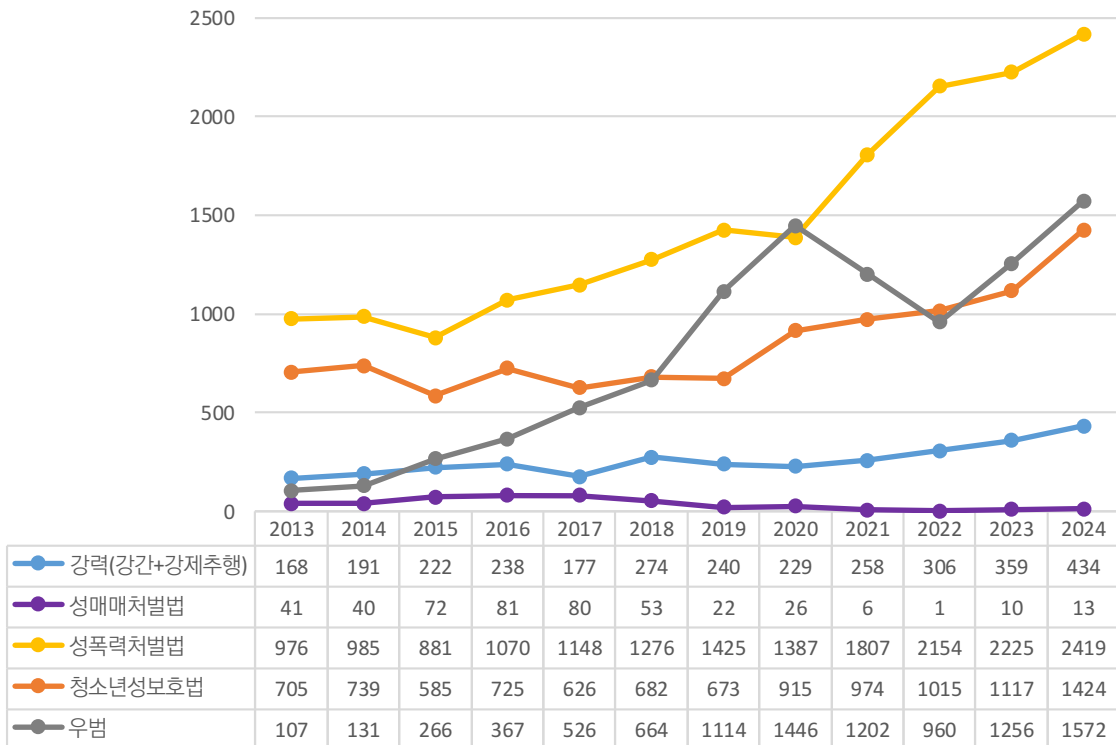
* 주: 2015년부터 <범죄분석>이 개편되어 성폭력 외의 관련 범죄 시계열 비교를 위해 2015년부터 제시함.

그림 7. 검찰 <범죄분석> 상의 미성년자 성비행 발생 현황(2013~2024)



* 자료: 법원행정처,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 <사법연감>, 각년도.

그림 8. 법원 <사법연감> 상의 소년보호사건 중 강력범죄 접수건수(2013~2024)



* 자료: 법원행정처, 소년보호사건 중요 죄명별 처분 인원수표, <사법연감>, 각년도.

* 주: 우범은 성비행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비교 및 논의를 위해 포함한 것임을 밝힘.

그림 9. 법원 <사법연감> 상의 소년보호사건 중 성비행 유형별 접수건수(2013~2024)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 3



중, 보호만 할 것인가? 처벌도 가능하게 할 것인가? - 처벌하되, 책임 있는 보호주의가 우선

정의림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토론
3

중1, 보호만 할 것인가? 처벌도 가능하게 할 것인가? - 처벌하되, 책임 있는 보호주의가 우선

정익률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촉법소년은 이제 중대한 국가적 의제

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 현상이 연일 조명되면서, 현행 소년사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 다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한 엄벌을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범죄 현장의 최일선에서 소년범을 마주하는 형사사법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반복되는 재범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들을 근거로 현행 보호처분 중심 대응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사법 처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은 형사정책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소년범죄와 교정교화를 연구하는 학계 및 소년보호기관 종사자들은 처벌의 강화가 곧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범죄학적 실증 연구를 바탕으로 연령 하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조기 전과자 양산이 초래할 낙인 효과(Labeling Effect)가 오히려 건전한 사회 복귀를 차단하여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 반론하며, 처벌보다는 교화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기한을 두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본 사안은 중대한 국가적 의제로 부상했다. 더 이상 찬반의 평행선을 달릴 수 없는 시점이 도래한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도 있는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

■ 촉법소년 범죄 양적 증가와 질적 흉악화

경찰청에 접수된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4년 2만 814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3년 만에 범죄 건수가 2배 가까이 급증하였다.¹⁾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년보호사건 5만 848건 중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29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역대 최다 기록에 해당한다.²⁾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범죄의 질적 악화 문제도 뚜렷하다. 단순 절도나 폭행을 넘어, 범죄의 죄질이 심각

1) 경찰청 통계자료(2025년 10월 국회 제출 자료 기준)

2) 대법원 「2025 사법연감」

해지는 흉포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대비 2025년 전체 형사미성년자의 범죄 건수는 약 8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대표적인 흉포화 지표인 강간 및 추행 등 성폭력 범죄 건수는 약 85% 증가하며 전체 범죄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³⁾ 시도 경찰청 단위 사례에서도 2022년 대비 2024년 전체 촉법소년 송치 건수는 27.2% 증가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강간 및 추행 범죄는 105건에서 185건으로 76.1% 급증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⁴⁾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은 명확하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7천 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최근 3년간 범죄 건수는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범죄의 흉포화에 있다.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중대 강력범죄의 증가율이 전체 범죄 증가율을 압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소년법의 온정주의적 보호처분 체계가, 지능화되고 흉포화되는 일부 중범죄 소년들에게는 더 이상 범죄 억제력이나 보호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의 결과물이다.

■ 연령하향이 곧 형사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현재 만 13세는 촉법소년이므로 아무리 흉악하고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도 법적으로 형사재판에 넘길 수 없으며, 오직 소년보호사건(보호처분)으로만 처리된다. 연령 상한이 하향되면 13세는 기존 14~18세가 속해 있는 범죄소년 그룹에 편입되어 이원적 처리 구조(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핵심은 형사처벌이라는 선택지를 하나 더 추가하여, 예외적인 흉악강력범죄에 한해 엄중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열어둔다는 데 있다.

소년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절도, 단순 폭행 등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소년법의 핵심 이념인 건전한 육성과 교화에 따라 여전히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나이가 어릴수록 법원은 교화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중범죄로서 살인, 강도, 집단 성폭행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소수의 사건에 한해서만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듯 형사미성년 연령을 13세로 낮추더라도 13세 소년에게 실제로 징역형 등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법 개정은 상징적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촉법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양적, 질적으로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범죄 억제력이나 위하효과가 미미하다는 실증적 이유만으로 만 14세라는 기존의 기준을 고집할 명분은 크게 약화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사법 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도구적 목적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적 합의와 정의 관념 또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언적이고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여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단순한 엄벌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13세 소년에 대한 형벌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되 실제로는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처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치우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13세냐, 14세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 소모적인 논쟁은 거두고 실질적인 보호처분에 보다 관심의 초점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3) 법무부 국무회의 보고 자료(2026년 3월)

4) 경기남부경찰청 소년범 송치 통계자료(2026년 2월 기준)

■ 각국의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보호처분

먼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한 국가로는 독일과 일본이 있다.

독일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시작되는 연령을 만 14세로 규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14세 미만의 아동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으며, 오직 아동청소년청을 통한 교육적 복지 조치만 이루어진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유사하여 만 14세부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2000년 소년법 개정을 통해 흉악 중범죄에 대해 성인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도록 검찰로 역송치하는 연령 기준을 기존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낮추어, 중범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확대했다. 그러나 14세 미만 소년의 시설 내 처우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등 교육과 교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영국, 호주, 프랑스 그리고 미국등이 있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호주⁵⁾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만 1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0세 이상의 소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경찰에 체포되고, 소년법정을 거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강한데 이는 과거 소년들에 의한 참혹한 살인 사건(제임스 벌저 사건 등)을 겪으며 엄벌주의 기조가 강하게 자리 잡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각 주마다 기준이 다르나 뉴욕을 비롯한 다수의 주에서 형사미성년의 나이를 만 13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주에서는 만 7세부터 14세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⁶⁾

이 외에도 캐나다와 네덜란드는 만 12세 미만, 프랑스는 만 13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별 입법례를 종합해 보면, 대륙법계(독일, 일본)는 우리와 같이 만 14세를 형벌 개입의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반면, 영미권(영국, 미국 일부)이나 프랑스는 만 10세 ~ 13세로 그 기준이 더 낮거나 중범죄에 한해 처벌 연령을 크게 낮추는 유연함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 역사적 경험과 범죄 통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 기준과 대응 방식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겠다.

참고할 사례로 덴마크의 경우 2010년 청소년 범죄 억제를 위해 형사책임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춘바 있다. 그러나 범죄 감소는커녕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10% 증가하고, 학업 복귀율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불과 20개월 만에 다시 15세로 상향하였다. 단순한 연령 하향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2021년 형법 개정을 통해 원칙적인 책임 연령을 유지하면서도,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고의살인, 중상해 등 극히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정황이 악랄한 경우에 한해,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조건부 형사책임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엄벌주의와 보호주의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물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UNCRC)는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다.⁷⁾ 유엔의 권고는 우리가 존중해야 할 인권의 보편적 지향점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어떠한 예

5) 호주의 전통적 기준은 만 10세이지만, 최근 각 주의 정치적 상황과 여론에 따라 10세, 12세, 14세가 혼재되어 적용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주는 10세를 기준으로 함.

6) 펜실베이니아주 등 일부 주에서는 살인죄에 한해 아예 연령 하한을 두지 않고 있어 연령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함.

7) General Comment No. 24

외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성역이나, 국가의 형사 입법권을 묶는 획일적인 족쇄로 삼을 수는 없다. 형사사법 체계는 각 국가가 직면한 고유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범죄 양상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스탠더드란, 국제적 인권 기준을 참고하되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구체적 현실에 맞서 가장 적합하고 균형 잡힌 우리만의 사법 시스템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보호주의 원칙하에 책임 있는 보호주의 실현

현행 제도는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 하나만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고 오직 소년법에 따른 절차와 보호처분만을 강제하고 있다. 덴마크나 미국의 사례처럼 연령 하향 자체가 가져오는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낙인효과라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으로 변화한 현대 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상태, 국민의 법 감정, 그리고 극소수이긴 하나 명백한 고의를 가지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살인, 성폭력 등)를 야기하는 흉포화된 범죄의 실재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이제는 촉법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호처분만을 내리는 획일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사안의 중대성, 범행의 잔혹성 등 죄질과 소년의 개전의 정(반성 정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투 트랙 시스템 내지 재량적 이송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교화 가능성이 높은 소년에게는 실효적 보호처분을 집중하되, 극악한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사법망이 작동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에 전달하는 것이다.

만 13세 소년범죄의 대다수는 여전히 현행 소년보호처분 시스템 내에서 교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되, 무분별한 형사처벌의 확대가 아닌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강화와 보호처분의 실질화, 조건부 형사책임 모델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연령 조정의 목적은 처벌의 확대나 응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가해 소년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하는 **회복적 사법의 관점이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호처분 프로그램의 개발, 전문 교정 및 치료 시설의 확충, 소년 보호관찰 인력의 증원 등 실질적인 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책임 있는 보호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제재 위주의 보호처분 체계로는 소년범의 근본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처분 제도를 다양화, 현실화하여 아이들을 억압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보듬고 치료할 수 있는 원호(지원 및 복지) 중심의 보호처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엄벌의 기준을 세우되, 그 이면에서는 강력한 원호적 보호처분이 동시에 작동하는 투트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하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는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의 규범적 기대를 반영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연령 하향이라는 상징적 결단 위에서,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년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가해자의 교화를 넘어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어떻게 처벌하고,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하게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 뜨거운 논쟁의 이면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범죄의 흉포화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가해자와 비슷한 또래의 어린 피해자들이다. 어린 시절에 겪은 잔혹한 범죄 피해의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한 인간의 평생을 움아매는 깊은 흉터로 남게 된다.

우리는 가해 소년의 미래가 낙인으로 망가질 것을 몹시 우려하며, 그들에게 국선보조인을 지원하고 다양한 보호처분과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가해 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명목으로 다양한 보호처분과 상담, 교육 등 다각적인 제도적 보완장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와 비슷한 또래인 어린 피해자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상처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절망으로 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보듬고 있는지 의문이다. 가해자의 미래를 염려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에 비해, 정작 가장 억울한 피해자의 무너진 일상을 재건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은 너무나도 빈약한 것이 냉혹한 현실인 것이다.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을 논하는 것만큼이나, 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 할 것이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제도의 본질은 처벌의 확대가 아니다. 가해 소년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뼈저리게 직시하게 만들고, 진정성 있는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하는 회복적 사법에 기반해야 한다. **책임 있는 보호주의는 가해 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교정·교화 인프라의 확충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치유와 지원 시스템이 전제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두고 국가적 공론화의 장이 열린 만큼 저는 이 자리가 단순히 가해자를 몇 살부터 감옥에 보낼 것인가라는 좁은 틀의 논쟁에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이 사회적 대화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넘어,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을 논의하는 따뜻하고 이성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 4



토론문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토론
4

토론문

강소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장)

2026년 3월 10~12일 실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에 찬성 81%, 반대 13%, 유보 6%로 나타났으며, 찬성 응답자 가운데서는 ‘만 12세 미만’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갤럽리포트, 2026). 이처럼 국민 여론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강하게 기울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책적·학문적 관점에서는 연령 하향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기 어렵고, 낙인이나 형사처벌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는 단순히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년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조기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에는 단순한 처벌 강화 요구를 넘어 사회적 불안과 제도 신뢰 문제에서 비롯된 몇 가지 정책적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력범죄와 재범에 대한 사회적 불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의 범행 증가와 일부 잔혹 사건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현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 제도 악용에 대한 인식입니다.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사회적 인식이 범죄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셋째, 청소년의 정보 접근과 사회 경험 확대입니다. 디지털 환경과 사회 변화 속에서 만 13세 전후 청소년도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넷째, 피해자 보호와 범감정의 문제입니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형사책임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구조는 피해자입장에서 불공정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위법성 인식이 곧 형사책임을 의미하는가?

일부에서는 과거보다 청소년의 정보 접근과 사회 경험이 확대되면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 능력 역시 높아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정책적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teinberg(2009)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지적 판단 능력은 약 15~16세 전후에 성인 수준에 접근하지만, 충동 억제와 위험 평가 등 자기통제 능력은 20대 초반까지 계속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청소년은 행위의 위법성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 이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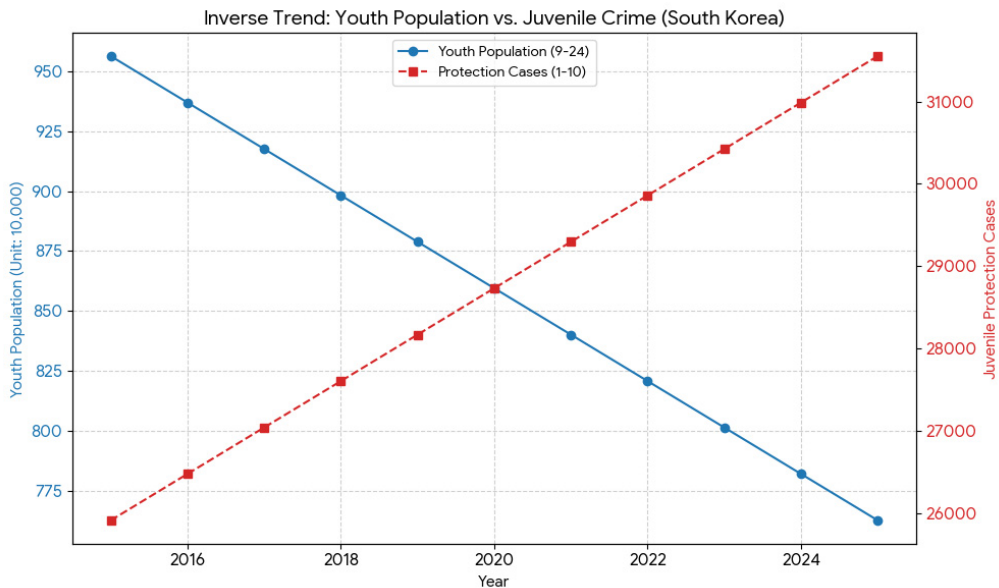
따른 책임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 청소년이 더 성숙하다”는 주장 역시 엄밀한 경험적 사실이라기보다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성숙의 변화를 근거로 형사책임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 검토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정책 결정의 직접적 근거로 삼기에는 발달심리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소년범죄 대응은 단순한 처벌 중심 접근이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조기 개입과 교정 중심의 정책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강력범죄·재범우려·법감정: 촉법소년 논쟁의 배경

최근 소년범죄 통계가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형사책임 연령 바로 아래 구간(13세)에 집중되는 구조적 양상입니다. 또한, 범죄양상의 변화와 재범 문제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소년범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현행 제도가 소년범죄를 충분히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2025년 청소년 인구는 2016년 대비 약 18.6%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 지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여성가족부, 2025; e-나라지표 청소년 인구 추이).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0년 3만 8,590건에서 증가하여 2024년에는 50,848건으로 늘었고, 촉법소년 수 역시 2021년 처음 4,000명을 넘어선 이후 2024년 7,29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조선일보, 2026). 또한, 소년부 보호처분(1~10호) 건수는 2015년 25,911건에서 2024년 30,989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청소년 인구가 약 18.6% 감소하는 동안 보호처분 건수는 약 20%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흐름으로 보면 현행 제도가 소년범죄를 충분히 억제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의문을 생깁니다.



형사책임 문턱 바로 아래에서 벌어지는 범죄

최근 소년범죄는 절도·단순 폭력 중심의 전통적 비행에서 벗어나 집단폭행, 디지털 성착취, 마약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강간·추행 등 성범죄는 2021년 398건에서 지난해 883건으로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5년간 검거된 촉법소년 8만 9,674명 가운데 형사책임 직전 연령인 13세가 5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12세 26.7%, 11세 1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일보, 2026). 이는 소년범 증가가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형사책임 문턱 바로 아래 연령대에 범죄가 집중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식의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되면서, 일부에서는 소년사법제도의 보호 취지를 책임 회피의 언어로 학습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처분 이후에도 재범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됩니다. 2023년 보호관찰 대상 소년 가운데 처분 변경 인원은 5,334명에 이르며, 소년원 수용 인원 2,092명 중 약 785명(약 37.5%)이 보호관찰 위반 등으로 다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법무부, 2024). 이러한 통계는 보호처분 이후에도 반복적인 비행이 누적될 가능성이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조기 비행은 평생 범죄로 이어지는가?

범죄학 연구에서도 조기 비행이 이후 지속적 범죄 경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Cottle et al.(2001)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소년재범을 가장 강하게 예측하는 변수는 기존 범죄 경력의 수와 범행 시작 연령이었으며, Bacon et al.(2009)과 DeLisi(2013) 역시 범죄 시작 연령이 이룰수록 이후 만성적 범죄경로(chronic offending)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행 초기 단계에서의 개입이 이후 범죄경로의 형성과 고착을 좌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논의는 단순히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비행 초기 단계에서 어떠한 제도적 개입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제도에서는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직전 연령대에 범죄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처분 이후에도 반복 비행이 이어지는 구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 비행 단계에서 보다 효과적인 개입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 기준의 조정이나 중대 범죄에 대한 예외적 대응 장치를 논의하는 경우에도, 그 취지는 단순한 처벌 강화에 있기보다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교정·치료·보호 프로그램을 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연령 기준의 논의는 엄벌주의의 연장이 아니라, 조기 개입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정책 설계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책임 기준은 단순히 처벌 여부를 나누는 장치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규범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능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책임 기준이 존재할 경우 청소년에게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성과 규범적 기대가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Damm et al.(2025)은 청소년의 인지 능력과 도덕

적 판단이 환경적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정 연령에서 명확한 법적 책임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사회적 규범의 내재화와 범죄 억제에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Reflections on Lowering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2023) 역시 형사책임 연령 조정이 일반예방적 효과(general deterrence)를 통해 잠재적 범죄억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결국, 촉법소년 연령 문제는 소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비행 단계에서 교정적 개입과 규범적 억지력을 어떻게 함께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사법제도를 설계하는 방식

국제적으로 형사책임연령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형사책임연령이 보편적으로 고정된 기준이라기보다 각 사회의 범죄환경, 정책 목표, 사법체계에 따라 선택되는 입법정책 변수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영국(잉글랜드·웨일스)은 10세, 캐나다는 12세, 독일과 일본은 14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호주는 10세 미만은 형사책임이 없고 10~14세 구간에서는 위법성 인식 여부를 추가로 판단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14세 기준 역시 여러 제도 모델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국제적으로 유일하거나 절대적으로 고정된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국제기구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연령 상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UN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역시 각국의 제도와 운영 방식이 다양하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며, 핵심은 단순히 연령 숫자 자체가 아니라 연령 경계 전후의 아동을 어떻게 공정하고 비낙인적으로 다룰 것인가에 있습니다. 즉, 절차적 보호, 전환(diversion), 교정,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제도 설계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실제로 여러 국가의 제도를 보면 형사책임연령이 낮다고 해서 곧바로 성인 처벌 중심 체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국(잉글랜드·웨일스)은 형사책임연령을 10세로 두고 있지만 10~17세 사건을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Youth Court에서 엄격하게 처리하며, 성인과 다른 처분 체계와 청소년 전용 보안시설(secure centre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10세 미만 무책임 원칙과 함께 10~14세 구간에 'doli incapax' 원칙을 적용하여, 검사가 아동이 자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잘못된 행위(seriously wrong)'임을 인식했는지를 입증해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NSW Judicial Commission, 2025). 실제로, RP v The Queen(2016) 사건에서 호주 고등법원은 이러한 인식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NSW Judicial Commission, 2025).

캐나다 역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청소년 형사사법 적용을 제한하면서도, 제도의 목적에 피해자 이익 고려, 책임성 부여, 의미 있는 결과, 재활과 사회복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Youth Criminal Justice Act, S.C. 2002, c. 1). 일본 또한, 14세 미만을 형사범으로 보지 않지만 '14세 미만 위법행위 소년'이라는 별도 범주를 두어 필요할 경우 가정재판소 심리와 보호처분 체계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형사책임연령 논쟁의 핵심이 단순히 연령을 낮출 것인가의 문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실효적으로 개입하면서도 경미 사건은 비낙인적 처분과 전환(diversion)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 것인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관할	기준(핵심)	절차·처분 특징(핵심)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10세	10~17세는 youth courts에서 처리, 성인과 다른 sentences, 청소년 secure centres수용 ⁸⁾
호주(NSW, common law)	10세 미만 무책임, 10~14세 doli incapax	10~14세는 doli incapax(책임능력 부정 추정) 적용: "right/wrong" 구별 이해 여부가 쟁점, 검사가 입증 ⁹⁾
캐나다	12세 미만은 YCJA 적용 대상 아님 (실무상 12~17세가 청소년 형사사법 적용)	청소년 사법은 피해자 이익 고려, 책임성·의미 있는 결과, 재활·재통합, "가장 중대한 범죄에 가장 강한 개입"을 표방 ¹⁰⁾
일본	14세 미만은 '범죄'로 보지 않지만, '14세 미만 위법행위 소년'으로 절차 관리	14세 미만 위법행위 소년은 가정재판소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음(소년사법·보호처분 체계로 대응) ¹¹⁾

한편, 현행 소년사법은 가해 소년의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시하는 보호주의적 취지에 기반하지만, 강력범죄나 반복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회복과 안전 확보 측면에서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 보호가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안전과 절차적 정당성,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 목적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Youth Criminal Justice Act」는 서문에서 청소년 사법이 피해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청소년에게 책임성과 의미 있는 결과(meaningful consequences)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재활과 재통합을 지향하는 체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Youth Criminal Justice Act, S.C. 2002, c. 1).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촉법소년 논쟁은 단순한 범죄증가 문제를 넘어 범죄의 저연령 집중, 범죄양상의 변화, 재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 속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형사책임 연령 직전 연령대에 범죄가 집중되는 현상과 반복 비행 구조는 현행 제도가 조기 비행 단계에서 충분한 개입과 교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실효성 문제는 단순한 처벌 수위의 문제가 아니라 조사·진단 체계의 한계, 위험군 선별의 어려움, 지역사회 기반 교정 프로그램 부족,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의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 등 사회내 처우가 재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8) GOV.UK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영국 정부): <https://www.gov.uk/age-of-criminal-responsibility>

9) NSW Judicial Commission(Children's Court Bench Book) "Doli incapax": https://www.judcom.nsw.gov.au/publications/benchbks/children/CM_Doli_incapax.html

10) 캐나다 법무부(연방법) Youth Criminal Justice Act(서문): <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y-1.5/page-1.html>

11) 일본 법무성 범죄백서(영문 PDF) "Juvenile offenders under 14...": https://hakusyo1.moj.go.jp/en/73/WHITE_PAPER_ON_CRIME2024.pdf

불구하고, 실제로는 청소년의 위험 수준과 범죄 유형에 맞는 맞춤형 개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소년범죄가 집단폭력, 디지털 범죄, 성범죄 등으로 변화하면서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치료·상담과 장기 관리 체계 역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연령 하향 논의는 단순한 처벌 강화 요구라기보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범죄억지와 재범 방지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곧바로 형사책임 연령 하향이라는 정책으로 연결하기보다는, 먼저 소년사법제도의 조사·진단 체계와 보호관찰·치료 프로그램, 지역사회 기반 교정 시스템을 정비하여 조기 개입과 교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선이 장기화될 경우 현재 나타나는 저연령 범죄와 재범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 역시 소년범죄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병행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살인이나 성폭력과 같은 중대한 강력범죄의 경우 일반 비행과 동일한 책임 구조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선별적 책임 구조를 검토하는 논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형사책임연령을 10세로 두면서도 청소년 사건을 Youth Court에서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UK Ministry of Justice, 2023), 캐나다 역시 「Youth Criminal Justice Act」에서 재활과 재통합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개입을 허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Youth Criminal Justice Act, 2002).

결국, 촉법소년 연령 논쟁의 핵심은 소년을 더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조기 비행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교정할 수 있는 소년사법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령 조정 여부 역시 제도 정비와 조기개입체계 구축을 전제로, 범죄 유형과 피해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대응 방안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문헌

Bacon S, Paternoster R, Brame R. (2009),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onset age and subsequent offending during adolescence. *J Youth Adolesc.* 38(3):301-11.

Cottle, C. C., Lee, R. J., & Heilbrun, K. (2001). The Prediction of Criminal Recidivism in Juveniles: A Meta-Analysis: A Meta-Analysi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28(3), 367-394.

Damm, A. P., Larsen, B. Ø., Nielsen, H. S., & Simonsen, M. (2025). Lowering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Consequences for Juvenile Crime.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41(3): 495-521.

DeLisi, M. (2013). Early starters: Which type of criminal onset matters most for delinquent career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1(1), 12-17.

GOV.UK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영국 정부): <https://www.gov.uk/age-of-criminal-responsibility>

NSW Judicial Commission(Children’s Court Bench Book) “Doli incapax”:
https://www.judcom.nsw.gov.au/publications/benchbks/children/CM_Doli_incapax.html

Steinberg, L. (2009). Adolescent development and juvenile justice.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5, 459-485.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General Comment No. 24 on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일본 법무성 범죄백서, “Juvenile offenders under 14…”:
https://hakusyo1.moj.go.jp/en/73/WHITE_PAPER_ON_CRIME2024.pdf

캐나다 법무부(연방법) Youth Criminal Justice Act(<https://laws-lois.justice.gc.ca/eng/acts/y-1.5/page-1.html>)

갤럽리포트, 데일리 오피니언 제655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2026.03.12.일자.

공공데이터포털, 대검찰청_소년범죄자 보호처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5&tblId=DT_13501N_A086&conn_path=I2)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4), 2024 범죄예방정책 통계분석.

여성가족부, 「2025 청소년 통계」(2025. 05. 27); e-나라지표 청소년 인구 추이.

조선일보,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 '보호처분' 촉법소년 7294명 역대 최다, 2026.03.13.일자.

한국일보, [단독] '촉법소년' 검거 절반이 13세...성범죄는 4년 새 두 배 급증, 2026.03.06.일자.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 5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 일반예방과 규범효과의 관점에서 본 토론문 -

송종영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토론
5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 - 일반예방과 규범효과의 관점에서 본 토론문 -

송종영 (법무법인 하민 변호사)

I. 문제의 제기

김혁 교수님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및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에 대한 검토」는 최근 중요한 형사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서는 소년법이 형법상 형사책임연령의 획일적 기준을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보호처분 역시 상당한 강제성과 제재성을 지닌 형사정책적 수단이라는 점을 논증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석은 소년법 체계의 구조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제 실행 선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통계적으로 제시하면서 연령 인하 논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신 점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는 소년 개인의 책임능력이나 보호처분의 실효성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법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규범의 효력을 전달하는 일반예방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범효과는 잠재적 행위자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연령의 설정 문제는 보호처분의 효과성 및 일반예방주의뿐만이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에게 미치는 규범효과라는 관점에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토론은 교수님의 논의를 존중하면서도 일반예방과 규범효과의 측면에서 형사책임연령 문제를 보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II.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과 형사책임연령

형법은 범죄행위자에 대한 제재 기능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게 규범의 효력을 인식시키는 일반예방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형사책임연령의 설정 역시 특정 연령층의 책임능력 판단을 넘어 사회 전체에 전달되는 규범 메시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14세 미만의 경우 형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형사적 개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 일반의 인식 차원에서는 “14세 미

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비교적 강하게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위하력은 실제 처벌의 빈도뿐 아니라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도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특정 연령대에 형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일부 청소년에게 법규범의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인식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III. 형벌의 위하력과 소년범죄 억제

교수님께서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제 실행 선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연령 인하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분석은 통계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형벌의 예방효과는 실제 실행 선고의 빈도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존재 자체가 규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일정한 억제 효과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벌과 보호처분이 사회적으로 전달하는 규범적 의미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은 국가의 공식적인 비난을 의미하는 반면 보호처분은 상대적으로 교정적 조치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IV. 학부모에 대한 규범효과의 가능성

형사책임연령 논의에서 비교적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미성년자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미치는 규범효과입니다.

청소년의 범죄행위는 개인의 충동적 선택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환경, 보호자의 지도와 감독, 또래 관계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법 규범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청소년 개인뿐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형사책임연령이 일정 수준까지 낮아질 경우 자녀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이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보호자들에게 자녀의 생활지도나 감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가정환경이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그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법 규범이 가지는 일반예방 기능은 단순히 잠재적 범죄자에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규범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자인 부모 역시 이러한 규범 효과의 중요한 수용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행동은 상당 부분 가정 내에서 형성되는 규범 의식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사법 규범이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장기적인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녀의 비행 가능성에 대한 법적 책임의식이 강화될 경우 부모가 자녀의 생활환경, 또래 관계, 온라인 활동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규범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 문제를 단순히 가정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으며 청소년 범죄 예방은 학교, 지역사회, 복지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하는 복합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연령의 설정이 단지 소년 개인에 대한 제재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규범 인식과 책임 구조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정책적 논의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V. 결론

김혁 교수님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인하 논의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책임연령 문제는 보호처분의 실효성뿐 아니라 형법의 일반예방 기능과 사회적 규범효과라는 측면에서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벌의 위하력은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규범 메시지는 잠재적 행위자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문제는 처벌 강화 여부의 문제로 단순화하기보다는 일반예방 효과, 보호처분의 실효성, 사회적 규범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사정책적 논의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 6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에 대한 토론문
“촉법소년의 문제는 형사정책 문제인가,
복지정책 문제인가?”**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토론
6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에 대한 토론문

“촉법소년의 문제는 형사정책 문제인가, 복지정책 문제인가?”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한국청소년복지학회장)

본 발표문은 형사책임 연령의 법적 의미와 소년사법제도의 구조, 연령 조정 논의가 갖는 형사정책적 의미와 함의를 분석하여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장의 공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사회적 관심을 크게 받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여부가 중요한 정책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논의를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사회적 대화를 시도하는 이 자리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자의 논지는 형사책임연령을 단순히 낮추는 방식의 문제 해결보다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들의 학문적 베이스를 살펴볼 때, 법적, 행정적 측면은 충분히 논의가 될 듯 하여, 본 토론자는 발표자의 발표문에서 다루지 못한 청소년복지, 청소년학 관점에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형사책임 연령 논의는 아동·청소년 발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발달심리학과 신경과학 연구는 **청소년기의 의사결정 능력과 충동조절 능력이 성인과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충동 억제, 위협평가와 미래의 판단 등의 고차원적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발달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다. 전두엽은 5세가 되어야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가지치기는 대략 12~13세 시작하여 20세 초반까지 일어난다(김봉년, 2019). 불안과 공포를 지휘하는 amygdala(아미그달라/편도체)가 증가하면 공격성이 증가한다(White et al., 2022).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면 전두엽과 편도체 연결을 약화하거나 소실시켜 충동 억제에 실패하고 공격행동이 증가한다(Volman et al., 2011). 11개국 5,227명 대상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논리적 추론과 언어능력의 인지능력은 16세쯤 성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성숙하며, 충동조절, 또래 외부 압력 저항, 미래지향성 등의 심리사회성숙도는 18세~20대까지 성숙한다(Icenogle et al., 2019). 이러한 발달심리학과 신경학적 특성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위험선택과 충동적 행동에 더 취약하며 발달이 다소 더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년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저 청소년은 왜 처벌받지 않는가?”라며 분노한다. 연령 하향 찬성자들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고, 신체적 성숙이 앞당겨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은 알 것 다 안다”는 주장은 인지 측면의 주장이라, 실제 범죄 행위는 감정적 고조의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전전두엽의 기능 발달이 훨씬 중요하다. 이러한 청소년의 발달 측면적 연구는 미국 대법원도 과학적 증거를 통해 소년의 책임능력이 성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박성훈, 박신의, 2023).

두 번째, 형사책임연령 인하가 실제로 범죄 억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자료 및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면 청소년 범죄 건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연령 하향을 주장한다. 실제 데이터는 존재할까?

대법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소년보호사건 접수건수는 2020년 28,590건에서 2025년 50,848건으로 1.8배 늘어났으며, 약 60%(2025년 30,989건)가 보호처분을 받고, 이 가운데 소년원 보호처분 인원수는 2020년 1,637명에서 2025년 2,532명으로 1.5배 늘어났으며(e-나라지표), 2025년 약 6.8%가 9, 10호 소년원 보호처분이다. 2020년 촉법소년 보호처분인원은 3,465명에서 2024년 7,294명으로 2.1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소년보호사건접수 중 23.5%를 차지하고 있다(대법원, 2025). 이 촉법소년의 범죄유형을 보고한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아 경찰청의 범죄소년전체 검거건수를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2024년 살인미수(0.02%), 강도(0.27%), 성폭력(2.82%) 등의 강력 범죄는 전체 소년범죄의 3.11%를 차지한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소년보호사건 중 청소년 폭행, 성범죄, 마약 사건이 증가세를 보이며, 절도 사건이 35.1%(법원행정처, 202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범죄가 사회적 취약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성범죄는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 폭력은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의 노출, 마약은 미디어 및 약물예방의 문제, 절도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의 원인이라 개인의 문제가 국한하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범죄자의 재범과 재복역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무부 교정본부(2025) 보고서를 참고하여 정리해보면, 성인 출소자 재복역률은 2019년 26.6%에서 2024년 22.6%인 4%p 감소한 반면, 20세 미만 재복역률은 2019년 45.8%에서 2024년 36.1%로 9.7%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성인 출소자 재범 비율보다 13.5%p 높으며 이는 성인 재복역률과 비교해 59% 높은 수치다. 이는 범죄의 처벌 강화가 청소년에게는 낙인이 되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년원 재범률은 2019년 26.6%에서 2024년 22.6%로 4%p 감소하며 소년교도소 20세 미만 재복역률보다 13.5%p 낮다. 보호처분 촉법소년이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소년원 재복역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처벌 강화보다는 보호처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의 근거**가 된다. 소년보호처분은 단순히 관용이 아니며 제재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년원 처우는 교육과 치료, 복지를 함께 제공하는 개입으로 성인 교도소보다 재사회화에 더 효과적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하향하는 것이 처음인지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훈을 얻는 것이 도움이 된다. 기존 국외 연구들을 보면 청소년을 성인 형사체계로 편입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재범률 및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한다. 미국의 경우, 성인 법정으로 이송된 청소년은 소년법원 청소년보다 재체포율이 33.7% 높았다(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2007). 2023년 The Sentencing project의 ‘왜 청소년 수감에 실패하는가’ 보고서(Mendel, 2023)에 의하면 미국 각 지역별 수감청소년의 재수감과 재수감 위험률을 보고하는데, 수감청소년이 성인 재수감 가능성은 4배 높고, 수감 기간이 길수록 재수감 위험은 22~26% 증가하는 반면, 보호관찰 유지시 체포율이 30% 낮아지며,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실시했을 때 저위험 청소년 재수감률은 1/10, 고위험 청소년의 재수감률은 1/3 수준인 것을 보고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이 낮거나 하향의 움직임 때문에 2019년 ‘아동사법제도에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을 통해서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14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독려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하향 조정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General Comment, 2019).

사법연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16~17세가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촉법소년(14세 미만)은 23.5%이다. 사법통계는 세부적인 연령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다른 자료(국회도서관, 2023)를 살펴보면 13세 범죄는 2017년 9.3%에서 2021년 13.5%, 14세는 10.1%에서 15.1%로 증가 폭은 오히려 14세 청소년이 더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범죄 증가가 연령의 하향 추세 문제라기 보다는 범죄 적발 시스템의 발전 및 범죄 유형의 다양화일 수 있다.

셋째, 청소년 범죄 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도덕발달 관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도덕성은 6단계로 발달하며, 1단계에서는 행동의 기준이 도덕적 가치보다는 처벌 회피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즉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그것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회피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논리로 도덕성 발달의 전인습수준을 청소년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청소년 정책이 처벌이 두려워 행동을 통제하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청소년의 도덕성을 발달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처벌 회피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물론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청소년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처벌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재사회화에 있다면, 우리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안전한 환경,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도덕적 사회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논의가 표면적으로는 법률적 문제로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에 연령 하향 논의가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 정책 마련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예방적, 재사회화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 마무리하며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범죄 및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조기 개입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는 위기청소년 발굴 시스템인 청소년안전망(CYS-Net)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발굴의 사각 지대를 존재하고 보호자 개입의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며 조기 발굴 및 개입을 강화한다. 청소년범죄는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중단 후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에 학교 내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 활동이 전 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차 예방이 중요하지만 이미 범죄에 진입한 청소년들의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의 3차 예방인 재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소년보호처분의 질적 개입 점검 및 강화가 필요하다. 소년원 인력의 전문성, 2, 3호 보호처분인 수강과 사회봉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 수행 체계,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6호 시설과 7호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 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이다. 범죄 청소년의 대부분은 가정해체, 방임, 학대의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가족의 구조적 문제보다는 가족의 기능적 문제가 많다. 청소년 자녀 가정의 보호자 교육과 가족 프로그램 확대, 소통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범죄청소년 가정의 포괄적인 사례관리 시스템 작동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년보호처분 이후 사후관리 시스템도 정교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프랑스의 쇠이유(Seuil: 문턱)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일부 실시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확대를 통해 범죄 청소년들이 좋은 성인을 만나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하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줌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셋째, 청소년 마음 치유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우울, 자살, 자해, 불안, 충동성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을 위해 상담적 서비스 외에 문화예술치유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누림 사업으로 소년원학교와 교정시설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에 의하면 예술누림 예산이 기존 142억에서 2026년 70억으로 감액되었다. 물론 소년원학교 프로그램이 감액된 것이 아닐 것이다. 올해 예산이 증액된 문화로 치유지원사업을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에게 적용한다면 그 치유적 효과가 클 것이다.

넷째, 지역 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정책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기반 환경 조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은 여러 청소년 문제를 예방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검증한 실증적 증거들이 많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3호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설치율을 확인하고 신규 설립이 어렵다면 지역의 유휴시설 활용을 검토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피해자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많은 국가들이 피해자인식 및 공감 프로그램, 멘토링 참여활동, 지역사회 기반 프로그램 등의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실시하고 있다. 회복적 사법을 연구한 학자들은 회복적 사법 참여 청소년의 재범률이 평균 약 25.8% 감소하고(DuMond, 2021), 회복적 프로그램 메타연구에서도 회복적 사법이 재범가능성이 낮춤을 보고한다(Wong et al., 2016). 가해자의 진정한 책임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회복적 사법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범죄 청소년은 범죄의 가해자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사회가 돌보아야 하는 인간이고, 그 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범죄 청소년에게 모두 돌려서는 안된다. 엄벌은 청소년에게 낙인감이 강해지고, 아동·청소년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한다.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회,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우리의 과업이다.

결론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는 단순히 처벌 가능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넘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우리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다 넓은 맥락 속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2023). 데이터로 보는 촉법소년 연령기준.
- 김봉년(2019). 나보다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요. 디자인하우스.
- 대법원(2025). 2025 사법연감.
- 박성훈, 박신의(2023).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둘러싼 증거기반(evidence-based) 연구의 검토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34(3), 1-40.
- 법무부 교정본부(2025). 2025 교정 통계연보.
- 법원행정처(2025). 2025 사법연감 통계.
-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38
- Icenogle G., Steinberg L., Duell N., Chein J., Chang L., Chaudhary N. et al. (2019). Adolescents' Cognitive Capacity Reaches Adult Levels Prior to Their Psychosocial Maturity: Evidence for a "Maturity Gap" in a Multinational, Cross-Sectional Sample. *Law Hum Behav*, 43(1), 69-85. doi: 10.1037/lhb0000315
- DuMond, E. (2021). *A Meta-Analysis of Restorative Justice and Juvenile Recidivism Rates*. Theses & ETDs. 6054. https://digitalcommons.ncf.edu/theses_etds/6054
- Mendel R. (2023). *Why Youth Incarceration Fails: An Updated Review of the Evidence*. The Sentencing Project.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2007). *Adolescent Brains Show Lower Activity in Areas That Control Risky Choices*.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9). *General Comment No. 24: Children's rights in the child justice system*.
- Volman I., Toni I., Verhagen L., Roelofs K. (2011). Endogenous Testosterone Modulates Prefrontal-Amygdala Connectivity during Social Emotional Behavior. *Cerebral Cortex*, 21(10):2282-2290. doi: 10.1093/cercor/bhr00
- White S. F., Estrada Gonzalez S. M., Moriarty E. M. (2022). Raging Hormones: Why Age-Based Etiological Conceptualizations of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Are Insufficient. *Frontiers in Behavioral Neuroscience*, 12(16):853697. doi: 10.3389/fnbeh.2022.85369
- Wong, J. S., Bouchard, J., Gravel, J., Bouchard, M., & Morselli, C. (2016). Can At-Risk Youth be Diverted from Crime? A Meta-Analysis of Restorative Diversion Program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43(10), 1310-1329.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 7



'면죄부'가 아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는 사법 정의의 실현

문덕주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사)



토론
7

'면죄부'가 아닌 '책임'의 무게를 가르치는 사법 정의의 실현

문덕주 (안산 상록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경사)

9년차 학교전담경찰관(SPO)이 목격한 무너진 교실의 실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이들의 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9년간 학교 현장을 누벼온 학교전담경찰관(SPO)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히 통계 숫자를 옮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만난 피해 학생들의 눈물과, 법망을 비웃으며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가해자들의 일그러진 미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라는 중대한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70여 년 전인 1953년에 멈춰 있는 법의 시계를 이제는 현대 청소년들의 성숙도와 범죄의 양상에 맞춰 현실화해야 합니다.

왜 지금 연령 하향이 절실한가

첫째, 13세 청소년의 인지적·신체적 성숙도는 이미 형사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1950년대의 14세와 2020년대의 14세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대의 13세 소년은 평균 신장 167.1cm로 과거에 비해 월등한 발육 상태를 보이며, 성인에 준하는 물리적 위해를 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아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미칠 사회적 파장과 법적 결과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따르더라도 12~15세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한 시기로, 이들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온정주의에 불과합니다.

둘째, 촉법소년 제도가 범죄의 '면죄부'로 악용되며 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촉법소년 범죄는 2.2배 증가하여 연간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2021년 대비 2025년에 무려 85%나 폭증하며 죄질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가해 소년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찰을 조롱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습니다. "촉법이라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범죄 억제력은 상실되었고, 이는 오히려 아이들을 더 큰 범죄의 늪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과의 괴리를 해소해야 합니다. 사법 시스템의 존재 이유는 가해자의 교화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정의의 수호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 13세 소년에게 잔혹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지켜보며 절망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95%가 촉법소년 범죄를 심각하게 여기며, 압도적 다수가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타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제적 추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 연령은 19세로, 선거권 연령은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청소년의 권리는 확대되었습니다. 권리가 늘어난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의 경계 또한 낮아지는 것이 법적 형평성에 부합 합니다. 또한 영국과 호주(10세), 캐나다(12세), 프랑스(13세) 등 많은 선진국이 이미 우리보다 낮은 형사책임 연령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올바른 성장을 위한 '경종'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단순히 아이들을 교도소에 보내자는 '엄벌주의'의 선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묻고 있다는 '경고'이자, 피해자에게는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위로'입니다.

연령을 낮춤으로써 13세 소년의 잔혹한 중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경미한 사안은 기존처럼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를 도모하는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법을 악용하려는 심리를 원천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선별적 엄벌과 전문 교정 시설 확충: 모든 13세 소년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에 한해 선별적 엄벌을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전국에 단 한 곳뿐인 소년교도소를 확충하고, 일반 성인 범죄자와 분리 수용하여 범죄 기술을 배우는 부작용을 막아야 합니다.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전면 도입: 처벌에만 집중하기보다 가해 소년이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마주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는 보호처분은 재범의 뿌리만 될 뿐입니다.

SPO의 권한 강화와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범죄가 발생한 후가 아니라, 비행의 징후가 보이는 '우범소년' 단계에서부터 SPO와 지역사회가 강력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복지 시스템과 연계한 종합적인 사후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법이 아이들의 방패가 되어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이끄는 엄격한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토론 8



소년재판실무에서 바라본 촉법소년 사건의 현황과 과제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토론
8

소년재판실무에서 바라본 촉법소년 사건의 현황과 과제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1. 들어가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논거 중 하나는 소년 범죄가 갈수록 저연령화·흉포화 되고 있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만으로는 사회방위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주제 발표문에서 인용된 통계자료인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사건의 법원 접수 추이>나 <범죄유형별 촉법사건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사건은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강간·추행 범죄나 절도 범죄, 폭력 범죄 등도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소년재판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촉법소년 사건의 변화 추이나 경향성이 과연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만으로 완화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촉법소년 사건의 구체적 태양을 범죄유형별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그 대략적인 원인을 진단한 후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그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등을 향후 과제와 연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2. 범죄유형별 촉법소년 사건의 구체적 태양 및 원인

앞서 언급한 <범죄유형별 촉법사건 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 사건은 기타 범죄를 제외하면 절도, 폭력, 강간·추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극소수에 해당하는 살인이나 강도, 방화는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먼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의 경우 최근 실무상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각종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물품 절도이다. 이는 불과 몇 년 사이에 폭증한 절도 유형으로서 무인화·자동화라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새로이 등장하였다. 더구나 촉법소년의 경우 그 연령에 따른 발달과정의 특성상 사회규범이 아직 완전히 내면화되지 못하여 비행을 촉발하는 외부의 환경적인 유인에 특히 취약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무인화·자동화라는 사회경제적 변화가 각종 무인점포에서 발생하는 절도사건 급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폭력의 경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과거에는 드러나지 않았거나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지

않았을 경미한 폭행 사건까지 가해 학생 측의 고소로 이어져 보호사건으로 송치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강간·추행의 경우는 성범죄로서 같은 범주로 묶여 있지만 강력범죄인 강간과 광의의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강제추행은 구별해서 보아야 촉법소년 사건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무상 강간보다는 강제추행의 사건 비중이 훨씬 높고 그 내용도 성적 호기심에 바탕을 둔 비교적 경미한 신체접촉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강간·추행과 같은 전통적인 성범죄 보다는 AI기술과 SNS 등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소지, 유포 등의 신종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대와 인스타그램, X, 텔레그램 등 SNS의 이용연령이 낮아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촉법소년 사건에서 간간이 발생하는 살인이나 존속특수상해와 같은 강력범행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중증 우울증 같은 촉법소년의 정신질환이 원인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일반 사건에서도 품행장애, 충동·분노조절장애, ADHD,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다른 비행유발 요인과 함께 복합적으로 비행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3.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 문제와 향후 과제

그러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촉법소년 사건 증가현상을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근 촉법소년 사건 증가 현상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그 효과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최근 촉법소년 사건은 신종 유형의 범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무인화·자동화와 같은 사회경제적인 변화, 교육환경 내의 제도적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의 증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대와 SNS 이용연령의 낮아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어 둬으로써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 현상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또한 지금도 범죄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 현재 소년형사재판의 실무 관행상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기소되더라도 연소자로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다는 이유 등으로 대부분 소년부 송치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촉법소년 사건의 흉포화 방지를 위한 일반 예방적 효과도 사실상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최근의 촉법소년 사건의 증가 현상 등을 완화·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맞추어 사회경제적, 제도적 변화에 따른 사회규범,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회의 확대, 디지털기기 사용 확대와 AI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윤리 교육의 실시, SNS 등을 통한 유해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같은 제도적 개선 등의 대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년법상 보호재판절차가 행정적 또는 복지적 성격과 함께 사법적 성격도 아울러 갖고 있고, 임시조치로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처분이나 보호처분으로서 8, 9, 10호 소년원 송치처분이 신체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시설 수용처분으로서 형사절차상 구속 내지 구금과 다르지 않는 점에서 소년법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제재의 공백을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보다 다양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소년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지속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재활소년원의 확대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마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은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사회적·문화적 변화, 국민의 법 감정, 소년 범죄 현황, 소년법의 취지,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는 하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의 비행 증가현상은 사회경제적·제도적 변화, 디지털기술과 환경의 변화 등 외부 환경적 요인이 보다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촉법소년의 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